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 2024 - 제5호

#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목 차

##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1. 정부 '민생물가TF' 출범, 2%대 물가 안착에 범부처 대응 (기획재정부) ····· 1

2.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관계부처합동) ····· 4

3.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 ····· 10

4.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개시(산업통상자원부) ····· 15

5.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 동향(통계청) ····· 18

6. 자율형 공립고 2.0 추가선정 계획(안) (교육부) ····· 21

7. K-패스 사업 시행(국토교통부) ····· 25


##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


1.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확대(경기도) ····· 31

2. 전남형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전라남도) ····· 36

3. 청년, 이사비 +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서울특별시) ····· 39

4. 자동차정비업소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정비 장비 지원(경기도) ····· 42

# 목 차

##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49

2.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대응 현황과 시사점 (농촌경제연구원) ····· 53

3. 2024년 지방행정 트렌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58

4.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없는 일자리가 되었나' (국회미래연구원) ····· 61

5.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63

6. 주민소송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건 · 비용 · 절차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68

7.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국회입법조사처) ····· 72


##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등 (국토교통위원회) ·· 79

2.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수행 기간 등을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86

3. 국립대학 시설확충의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원 예산 적정 수준 검토 필요 (교육위원회) 90


## Ⅴ. 기타 참고자료


1. [도서] 처음 만나는 정신과의사 ····· 97

2. (통계) 2022년 소아 ·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 103

# Ⅰ. 정부부처 등 주요 정책동향

#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동향

## 1. 정부 '민생물가TF' 출범, 2%대 물가 안착에 범부처 대응(기획재정부)

◇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 기재부, 농축산식품부, 산자부, 해수부, 공정위 등
◇ 주요 식료품 적시 공급,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2%대 물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 강화

### 1 관계규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2 중점사항

○ 민생물가TF 운영을 통해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 강구

○ 유통 · 비용 · 공급 등 구조적 개선 방안 범부처 협력 대응

### 3 주요내용

○ 민생물가TF 출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휘 하, **2%대 물가 안착** 목표

○ 기획재정부, 물가관계부처회의 열어 물가 동향 집중 점검 ('24.5.3.)

○ 회의 참석자 다수, **물가 둔화 흐름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

*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 이어져 **지난해 동기(同期) 대비 2.9% 상승**

#### ◇ 주요 추진사항

**① 농 · 수산물 수급안정**

- 정부 비축분 집중 방출 (배추 하루 110톤, 무 100톤 안팎)
- 배추 · 양배추 · 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 5월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
- 4월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 추가 비축
- 마른김 (700톤), 조미김 (125톤)에 할당관세 적용, 공급 확대 추진

**② 시장 모니터링 강화**

- 공정위 중심으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위한 신고센터 가동
-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 담합 의심분야 집중 모니터링 및 신속 조사

- 공정위,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발표 (5.3.)
  - 주요내용 : '슈링크플레이션'(고지하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것) 행위를 한 업체에 과태료 부과
  - 용량 변경 고지 대상 품목 : 우유, 커피, 치즈 등 가공식품 80개, 화장지, 샴푸 등 생활용품 39개

### ③ 민생물가TF 운영

-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공유, 2%대 물가 안착 노력 강화
-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 · 비용 · 공급 등 **구조적 개선** 방안 협력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외]

※ 전북 4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 대비 3% 상승** (농산물 물가 18.9% 급등 원인)

○ 전북, 경기침체 극복 위한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발표 ('24.4.23.)

- **3대 분야**(위기극복, 고충해결, 서민 일상), **65개 사업** : 총 774억원 투입 (국비 256억원 포함)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노력, '착한가격업소' 대상 추가 할인혜택 등
- 경영여건 악화로 폐업한 사업자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율 감면 추진
- 지역 건설경기 회복 위해 지방도 확장 및 포장 등 사업 상반기중 60% 이상 신속집행
- '다함께 민생추진단' 구성 (단장 : 도지사), 5월부터 민생 현장 지속 점검 (월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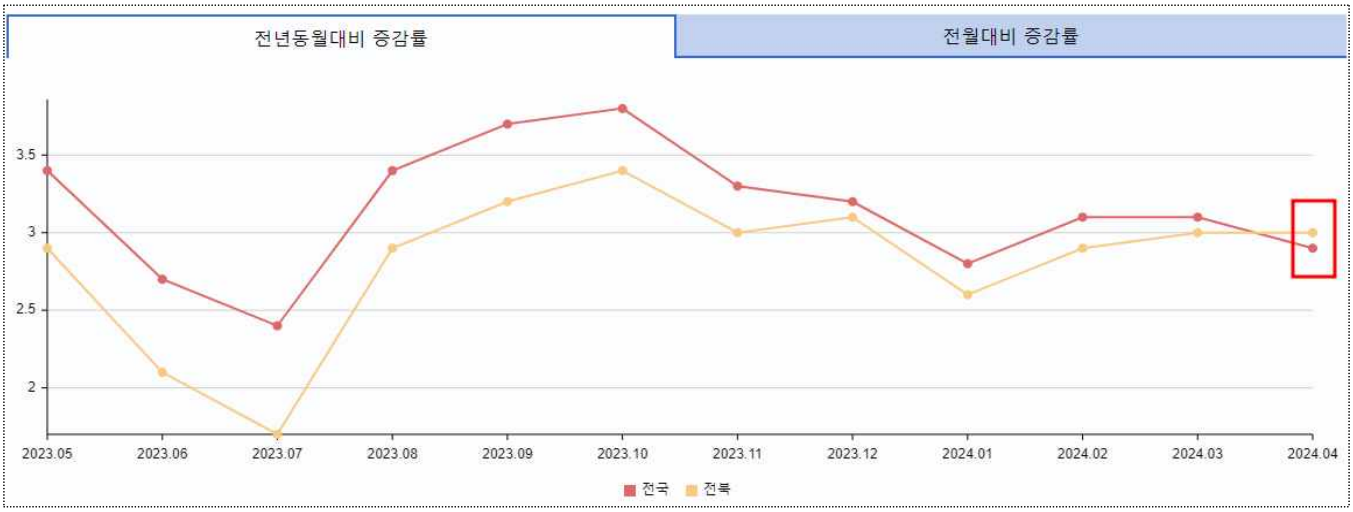
### <의회 차원 추진 검토>

◉ 기후위기 등 사회적 **재난 지속 확대 상황을 고려**하고, 국제사회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 대상 도 차원 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 요구 (타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 객관적 사업성과평가 통한 재정확보)

◉ 농산물가격 안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지속 (정부, 국회)

- 현 정부의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비판 및 오용 중단 촉구
- 농업재해 대상 품목 확대, 보험 가입기준 완화, 가입 대상 및 보장범위 확대 등 요구
- 정책보험으로서의 실효성 제고 요구 및 중 · 장기적 기후 - 농업 - 식량위기 대응 촉구

## [참고1]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전국 - 전북 비교)




| 지역 | '23.5. | 6月 | 7月 | 8月 | 9月 | 10月 | 11月 | 12月 | '24.1. | 2月 | 3月 | 4月 |
|---|---|---|---|---|---|---|---|---|---|---|---|---|
| 전국 | 3.4 | 2.7 | 2.4 | 3.4 | 3.7 | 3.8 | 3.3 | 3.2 | 2.8 | 3.1 | 3.1 | 2.9 |
| 전북 | 2.9 | 2.1 | 1.7 | 2.9 | 3.2 | 3.4 | 3.0 | 3.1 | 2.6 | 2.9 | 3.0 | 3.0 |

## [참고2] '24.4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 (요약) ※ 출처 : 통계청 전주사무소

○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0% 보합, **전년동월대비 3.0% 상승**

- **(품목성질별 지수)**
  · 농축수산물 : 전월대비 2.7% 하락, **전년동월대비 10.0% 상승**
  · 공업제품 :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2% 각각 상승**
  · 서비스 :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2%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0% 보합, **전년동월대비 3.5% 상승**
-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3.9% 하락, **전년동월대비 15.7% 상승**

○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 %p)

| | | 소비자물가지수 | 농축수산물 |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공업제품 | 석유류 | 전기가스수도 | 서비스 | 집세 | 공공서비스 | 개인서비스 |
|---|---|---|---|---|---|---|---|---|---|---|---|---|---|
| 가중치 | | **1,000.0** | **88.0** | 44.8 | 29.9 | 13.3 | **379.1** | 67.2 | **39.2** | **493.7** | 62.0 | 120.6 | 311.1 |
| **전월비** | 등락률(%) | **0.0** | **-2.7** | -3.9 | -0.5 | -2.1 | **0.4** | 1.6 | **0.0** | **0.3** | 0.0 | 0.0 | 0.4 |
| | 기여도(%p) | | **-0.25** | -0.21 | -0.01 | -0.03 | **0.14** | 0.09 | **0.00** | **0.13** | 0.00 | 0.00 | 0.13 |
| **전년동월비** | 등락률(%) | **3.0** | **10.0** | 18.9 | 2.4 | -2.7 | **2.2** | 0.9 | **4.3** | **2.2** | 0.1 | 1.4 | 2.9 |
| | 기여도(%p) | | **0.86** | 0.83 | 0.07 | -0.04 | **0.83** | 0.05 | **0.19** | **1.08** | 0.01 | 0.16 | 0.91 |

# 2.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관계부처합동)

◇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 위해 도매시장 경쟁 확대, 불공정 행위 엄단,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27년: 5조 원)**

## 1 추진배경

○ 과거 도매상 폐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락시장 등 **공영 도매시장**(32개소) 설립, 경매제 중심 **도매시장*이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

* 중소농의 시장교섭력 보완, 효율적인 농산물 분산, 효과적인 가격 발견 기능 수행

- 정부의 APC 투자 등 산지 규모화에 따라 **도매시장 거래 비중 감소 추세**

* 청과 유통경로별 비중(%, '03→'22): 산지소비지 직거래 7.2→30.5, 도매시장 78→52

○ 그러나, 도매시장 경유 유통이 여전히 50% 이상을 점유하면서 **도매시장 유통비용이 농산물 가격 급등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

- **도매시장** 경유 유통은 **단계가 복잡**하여 **물류비용, 단계별 유통마진** 등이 발생하여 산지와 소비지 가격간 괴리가 심하다고 비판

## 2 범부처 유통실태 점검 결과 및 주요 개선과제

◈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실태 점검단**」 개요

- **점검기간 및 대상:** '24.4.5~4.19(2주간) / 산지·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 총 36개소
- **참여기관**: 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 **주요 점검내용**: 농수산물 출하.유통실태 및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점검

○ (산지) 채소, 과일, 김 등 농수산물 모두 산지 **저장 용량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물량 규모화에 한계**

- 파레트 등 물류기기 공급업체는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유통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

* 시장점유율: A사(파레트 70%), B사(플라스틱박스 65%)

○ (도매) 도매시장 內 **경쟁제한***, **도매법인 수익 적정성 여부** 등 검토 필요

* 현행 농안법상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 절차 및 신규법인 공모 절차 등 부재

- **온라인도매시장**이 물류 비효율(先물류 後거래) 등 現 도매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필요

○ (소비지) **포장재** 과다, **전통시장·중소형마트**의 소량 거래가 비용 증가 요인

## 3 비전 및 목표

**비전**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편익 제고

**기본 방향**

◇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 단계별 비효율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목표**

- 농산물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現 49.7%) -

◇ 도매시장 경쟁 확대 및 불공정 행위 엄단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 : 5조 원('27)

◇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조기 구축('27 → '26)을 기반으로 APC 취급 물량 확대(청과: 30% → '27. 50)

### 4대 전략 및 10대 중점 추진과제

| | |
|---|---|
| 1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 ① 도매시장 內 경쟁 확대<br>②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br>③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 |
| 2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 ① 판·구매자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br>② 경쟁력 있는 판·구매 주체 육성<br>③ 법·조직 등 인프라 구축 |
| 3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 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 강화<br>② 물류기기 시장 경쟁 확대 |
| 4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 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新 소비 문화 정착<br>② 유통업체 간 경쟁 활성화 |

**추진체계 정비**

◇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소통 강화

# 4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세부 추진방안

## 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 [1-1] 도매시장 內 경쟁 확대

○ (**기존법인 지정취소 법제화**) 기존법인 지정기간(5~10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 결정, 신규법인은 **공모제**로 지정('24, 농안법 개정)

- 지정기간 내라도 평가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임의→강행규정)

* 2년 연속 부진 평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부진 평가, 재무 건전성 미흡 등

○ (**신규법인 진입 제도화**) 지자체 자율로 도매법인 지정* → 시장별 거래 규모 등 고려한 **법인 수 기준** 마련, 지자체 **신규법인 지정 의무화**('25)

* 현행 농안법은 개설자(지자체)가 도매시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의 법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 **'적정 수'의 기준은 부재**한 상황

○ (**품목 제한 해소**) 가락시장 內 **청과 법인**은 全 **품목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

* 가락시장 A 법인은 개설자의 법인 지정조건에 따라 배추, 무 등 8개 품목만 거래 가능

### [1-2]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

○ (**수익 적정성 여부**)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위탁수수료**(現 최대 7%) **상한 적정성 여부** 등 **수수료 체계** 검토('24.下 연구용역)

○ (**공적 역할 확대**) 법인 **공익기금 출연 확대**(現 가락시장 10억원), 타 시장으로 확산

### [1-3]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

○ (**반입량 예측·조정**) **사과**를 포함, **가락시장**에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 확대(6→16개, '24.下), '27년까지 **가락시장 全 품목**에 적용

* (기존 종이송품장) 시장에 상품이 반입된 이후에만 품목·물량 등 정보 확인 가능 → (전자송품장) 출하 단계에서 품목·물량 정보 사전 입력, 도매시장 반입량 예측 가능

○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도매법인 **전담 인력** 확보 의무화('25, 농안법 개정), **예약형 정가거래*** 비중을 도매법인 평가에 확대 반영(배점 3점 →6)

* 도매시장 거래 24시간 前 도매법인과의 협상과 조정하에 거래조건이 확정된 경우

○ (가격 공시방법 개선) 품목별 **품질 등급규격**을 반영한 가격 공시

## ②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 [2-1] 판·구매자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

○ (거래 품목 확대) 농산물은 **가락시장 거래 품목 수준**으로 확대('24년 121개 → '27년 193), **수산물**도 거래 개시('24.下)

○ (이용자 확대)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現 연간 거래액 50억원 → 20, '24.上), **거래 부류 제한 폐지***('24.下) , **판·구매자 거래 병행**** 등 제도개선 추진

* (현행) 가입한 부류만 거래 가능(청과/축산/양곡 등 칸막이) → (개선) 자유롭게 거래 가능

** (현행) 판매자는 판매만, 구매자는 구매만 가능 → (개선) 판·구매자 병행 가능

### [2-2] 경쟁력 있는 판·구매 주체 육성

○ (판·구매자)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를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등을 위한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중기부 협조)

* 전담인력 인건비, 공동선별비, 컨설팅 등 지원

○ (인센티브) **판매자** 대상 첫 거래 물류비·산지 출하장려금 등 신규 지원, **구매자**에게는 정산자금 무이자 기간(現 30일 → 최대 45) 연장 등 검토

### [2-3] 법·조직 등 인프라 구축

○ (물류)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연계, 온라인 거래 **통합물류 기능** 확충

-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 기반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 제공

○ (법·조직) 근거 법률 제정('24.下), 분쟁조정 등 시장운영자(aT) 기능 강화

## ③ 산지 유통 규모화 · 효율화

### [3-1] 산지의 유통 · 수급 관리 역량 강화

○ (농산물) **사과·배추** 등 주요품목의 **거점 스마트 APC 취급 물량 확대***,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도 조기 구축('27→'26)

* 사과(배) : ('22) 전체 생산량의 21%(45) → ('30) 50 / 가을배추(봄무) : ('22) 13(8) → ('30) 20

- **저온창고 확충**(사과·배), **농협 농작업 대행**을 통한 **계약재배** 확대(배추·무)

○ (수산물) **부산공동어시장**('26)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등을 통해 산지위판장(214개소) 통합 유도, 물량 규모화

- 유통단계 축소(6단계→4)를 위해 **산지 위판기능**도 온라인도매시장에 구현('25)
-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계약재배 도입**,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장 검토
- 출하 규격 다양화·상품화 지원(천일염) 등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 [3-2] 출하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기기 시장의 경쟁 확대

○ (시장구조 개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 도입, 물류기기 시장 **신규 진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업체는 모든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 시스템(aTPool) 등재 의무화

○ (물류기기 표준화) 유통업체와 협업, 농수산물 **플라스틱 상자 규격 표준화**

## ④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 [4-1]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新 소비 문화 정착

○ 인건비·포장비 등 절감을 위한 **'벌크 유통' 확산**

- 사과·양파 등 주요 품목 대상 **농협 하나로마트** 우선 실시('24.下)
- 소비자단체·유통업계와 협력하에 추진, **참여 업체 정책 지원 우대**

### [4-2] 유통업체 간 경쟁 활성화

○ 온라인플랫폼 간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 유도**

* 수수료 인하 업체에 대해서 정부의 가격·수급 안정사업 등 인센티브 부여

## 5 추진체계 정비

○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 **관계부처 합동*** 유통단계별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지속 모니터링, 필요시 법에 따른 엄단 조치

* 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등 참여

- 산지-소비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 **보유물량 사전신고제** 도입('24, 농안법 개정), 필요시 '**농수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검토

○ (**제도개선 지속 추진**) 유통 현안에 대한 **농수산물 유통포럼** 정례화(반기 1회)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산유통과]

○ 현재 전북자치도에서는 전주, 익산, 정읍 3곳에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 전주도매시장(1993.10.29. 법인수 : 4), 익산도매시장(1981.1.5. 법인수 : 3), 정읍도매시장(2000.3.10. 법인수 : 2)

○ 2022년 농산물 도매시장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익산시, 전주시는 보통 등급, 정읍시는 미흡 등급을 받았음

*「(2022) 농산물도매시장 평가 결과 보고서:개설자, 법인·공판장」, 농림축산식품부, 2023.

【 군별 평가 등급 현황 】

| 등급 | 개소수 | 1·2군 | 3군 |
|---|---|---|---|
| 최우수 | 2 | 인천남촌, 구리 | - |
| 우수 | 10 | 서울가락, 인천삼산, 광주서부, 서울강서, 부산반여, 부산엄궁, 대전오정, 울산, 대전노은 | 안양 |
| 보통 | 13 | 광주각화, 대구북부 | 안동, 청주, 수원, 창원팔용, 창원내서, 익산, 안산, 춘천, 천안, 순천, 전주 |
| 미흡 | 6 | - | 원주, 충주, 포항, 정읍, 구미, 진주 |

○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교통 및 주차장 부족, 시설의 노후화와 농수산물 유통 패러다임의 변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이용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나 이전 통합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3.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

◇ '25년 7월 시행되는 입양관련 법률(「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시행에 맞춰, 아동 입양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및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

## 1 추진배경

○ '입양의 날'(5.11.)을 기념하여 **'공적 입양체계 개편방안'** 및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7월 시행 발표

* 출생통보제 :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 의무화
보호출산제 :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입양의 공공화 모색

## 2 주요내용

○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 강화** (국외입양 최소화·국내입양 활성화) 및 가정위탁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25. 7.19. 시행예정

○ **입양체계 개편 방향**

**1) 입양대상 아동 결정 및 아동보호**

: **지자체장**이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현행)하고, 법원의 입양허가 전까지 **책임 및 보호**(변경)

| 절차 | 기존 | 개정 |
|---|---|---|
| ① **친생부모 상담** | 입양기관 | **지자체** ('21.6 아동복지법 개정) |
| ② **입양대상 아동 결정** | 보호자의 입양 동의 | |
| ③ **아동 보호** | 입양기관 | **지자체** |

**2) 예비양부모 조사 및 자격심의, 아동과의 결연**

: **예비양부모 조사**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 양부모 **자격심의 및 아동과의 결연**은 복지부에 **입양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

* 「아동복지법」 상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운영하고, 학계·의료·법률·입양 관련 전문가 등 50인으로 구성(위원장: 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 절차 | 기존 | 개정 |
|---|---|---|
| ① 신청 | 입양기관 |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
| ② 상담·가정조사 | | 복지부(위탁기관) |
| ③ 교육 | | 보장원(위탁기관) |
| ④ 적합성 결정 | | 복지부(위원회) |

### 3) 임시양육 결정 및 입양 허가

: 법원에서 **입양허가**('12년~) **전** 직권 또는 양부모의 신청으로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을 결정**하는 제도 신설

* 아이와 양부모의 상호애착 형성 및 조기 적응 유도, 양육상황 모니터링 등 실시

### 4) 입양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 **입양 성립 후** 최소 **1년간** 양부모와 양자의 **정기적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아동적응보고서 작성,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지자체 등에서 보관 중인 기록물(약 25만여건)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공적으로 관리, 정보공개 일원화**

| 절차 | 기존 | 개정 |
|---|---|---|
| 사후관리 | 입양기관 | 복지부 (위탁기관) |
| 정보공개 |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보장원 |

### 5) 보호대상 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 **입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입양인식 개선·양부모 교육·홍보** 강화

### 6) 국제입양 시 국가 간 상호 보증절차 마련

: **복지부를 국제입양 중앙당국**으로 지정, **해외 중앙당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 출신국 가정법원**에서 **허가한 국제입양 효력 상호인정**

*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출신국)**에서는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아동을 입**양 받는 국가(입양국)**에서는 **양부모의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상호보증**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여성가족과 · 교육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면,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아동과 양부모를 결연하고 양부모 상담과 입양 신청이 민간기관에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되어 입양 과정이 더욱 공정해지고 투명해짐

○ 전북자치도는 타 지역에 비해 입양에 대한 관심 및 홍보가 떨어지는 편으로 평가되어(한국입양홍보회), 지자체의 관심이 적은 지역일수록 입양에 대한 인식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 입양은 자녀가 없는 가정 외에도 국제 재혼가정 자녀 입양, 불임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 다양한 사유로도 이뤄질 수 있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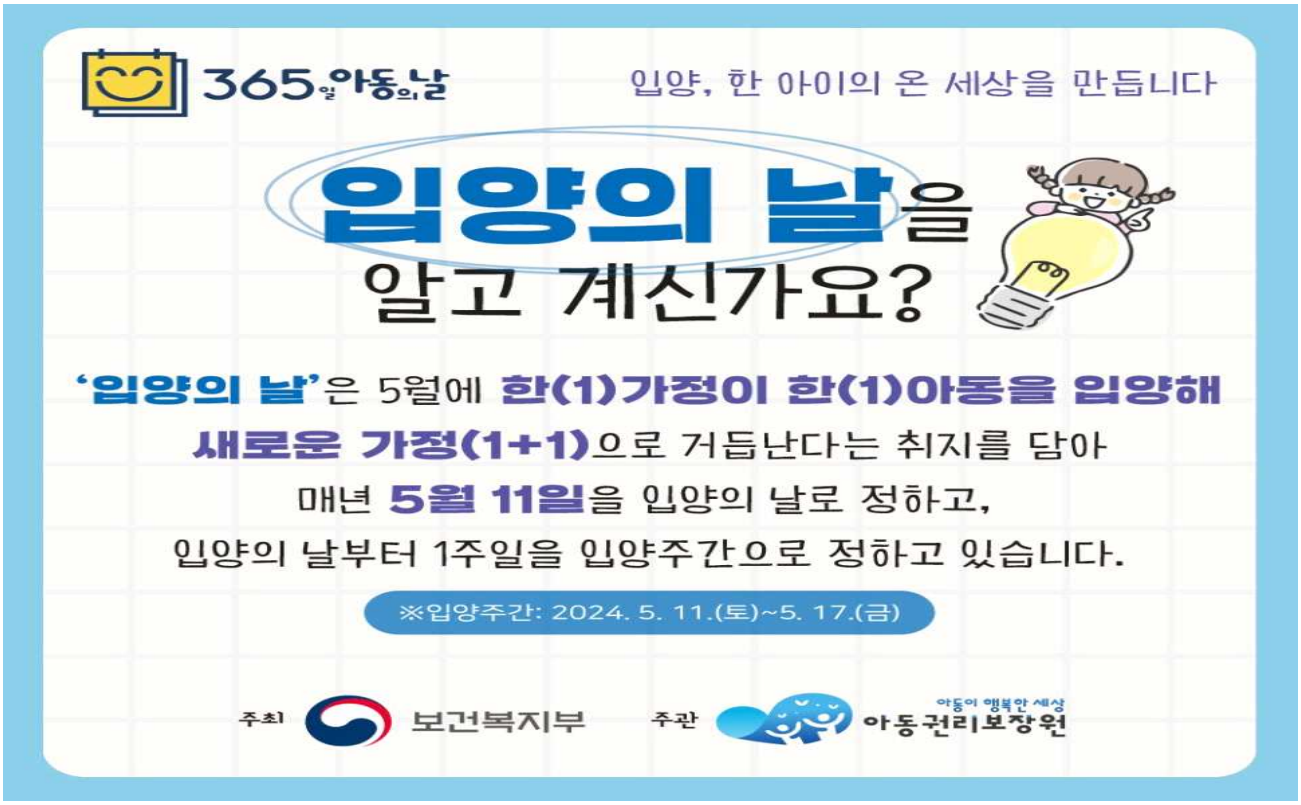
○ 현재 도에서는 ’국내입양 활성화사업 지원(국고보조사업)‘으로 총 6개 사업(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비용, 입양축하금 등)에 1,57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내 국내입양 아동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20년 19명, ‘21년 4명, ’22년 4명, ‘23년 2명, ’24년 2명) 입양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시점에서 입양제도를 바라보는 도의 정책 방향 제시가 요구됨

○ 저출산, 입양에 대한 편견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전국적으로 국내 입양 수는 해마다 주는 추세지만, 국내로 입양할 수 있음에도 해외로 아동들이 보내지는 경우가 있어(’23년 국외입양 79명: 전체 입양아 229명 중 34.5%), 국내 입양이 늘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 제주, 광주, 세종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어릴 때부터 입양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도록 초·중·고교생에게 ’반(反)편견 입양교육‘ 등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노력을 꾀하고 있음

○ 아동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다문화가족·한 부모 가족·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 조성이 필요함

## <2024년 전북자치도 국내입양 관련 사업 예산>

| 구 분 | 지 원 내 용 | '24년 지원규모 (본예산 기준) | 비고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양육수당 : 월 200천원 (만 18세 이하) | 총 사업비 1,404백만원 (585명 규모) | 국 70 도 15 |
|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 -양육보조금 : 경증 월 551천원, 중증 월 627천원<br>-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 | 총 사업비 98백만원 (15명 지원) | |
| 입양비용 지원 | -입양알선비용 지원 : 2,700천원/명<br>-입양철회비용 지원: 511천원/명 | 총 사업비 27백만원 (10명 규모) | |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지원<br>-(가정내 보호) : 350천원~500천만원<br>-(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 400천원<br>-(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최대 700천원 | 총 사업비 6백만원 (8명 규모) | |
| 입양축하금(장려금)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지급<br>(입양확정일이 '22.01.01.이후인 입양아동) | 총사업비 22백만원 (11명 규모) | |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검사비, 상담치료비 지원 | 총 사업비 22백만원 (10명 규모) | 국 70 도 30 |
| (기타)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 - 입양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보호비 지원 | 총 사업비 24백만원 (2명 규모) | 국 70 도 10 |



## 첨부 입양 관련 통계 ('23.11.)

### □ 연도별 입양현황

(단위: 명)

| 구분 | 계 | 2010년 이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계 | 249,959 | 238,105 | 2,464 | 1,880 | 922 | 1,172 | 1,057 | 880 | 863 | 681 | 704 | 492 | 415 | 324 |
| 국내 | 81,532 (32.6%) | 74,409 (31.0%) | 1,548 (62.8%) | 1,125 (59.8%) | 686 (74.4%) | 637 (54.4%) | 683 (64.6%) | 546 (62.0%) | 465 (53.9%) | 378 (55.5%) | 387 (55.0%) | 260 (52.9%) | 226 (54.5%) | 182 (56.2%) |
| 국외 | 168,427 (67.4%) | 163,696 (69.0%) | 916 (37.2%) | 755 (40.2%) | 236 (25.6%) | 535 (45.6%) | 374 (35.4%) | 334 (38.0%) | 398 (46.1%) | 303 (44.5%) | 317 (45.0%) | 232 (47.1%) | 189 (45.5%) | 142 (43.8%) |

※ '23년 전체 입양아동 총 229명 (국외입양 아동 79명)

### □ 입양아동의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 연도 | 국내입양 | | | | | | | 국외입양 | | | | | |
|---|---|---|---|---|---|---|---|---|---|---|---|---|---|
| | 계 | 성별 | | 연령 | | | | 계 | 성별 | | 연령 | | |
| | | 남 | 여 | 3월 미만 | 3월~1세미만 | 1~3세 미만 | 3세 이상 | | 남 | 여 | 1세 미만 | 1~3세 미만 | 3세 이상 |
| 2020 | 260 | 90 (34.6%) | 170 (65.4%) | - | 157 (60.4%) | 80 (30.8%) | 23 (8.8%) | 232 | 192 (82.8%) | 40 (17.2%) | - | 225 (97.0%) | 7 (3.0%) |
| 2021 | 226 | 78 (34.5%) | 148 (65.5%) | 12 (5.3%) | 121 (53.6%) | 69 (30.5%) | 24 (10.6%) | 189 | 133 (70.4%) | 56 (29.6%) | - | 185 (97.9%) | 4 (2.1%) |
| 2022 | 182 | 67 (36.8%) | 115 (64.2%) | - | 97 (53.3%) | 72 (39.6%) | 13 (7.1%) | 142 | 92 (64.8%) | 50 (35.2%) | 1 (0.7%) | 139 (97.9%) | 2 (1.4%) |

### □ 입양아동 발생 사유

(단위: 명)

| 연도 | 계 | 미혼모(부) 아동(혼외자포함) | 유기아동 | 가족해체등 |
|---|---|---|---|---|
| 2020 | 492 | 447 (90.9%) | 38 (7.7%) | 7 (1.4%) |
| 2021 | 415 | 355 (85.5%) | 49 (11.8%) | 11 (2.7%) |
| 2022 | 324 | 279 (86.1%) | 42 (13%) | 3 (0.9%) |

### □ 입양국가별 해외입양 현황

(단위: 명)

| 년도 | 계 | 미 국 | 스웨덴 | 캐나다 | 노르웨이 | 호주 | 룩셈부르크 | 덴마크 | 프랑스 | 이탈리아 |
|---|---|---|---|---|---|---|---|---|---|---|
| 2020 | 232 | 156 (67.2%) | 18 (7.8%) | 19 (8.2%) | 7 (3.0%) | 17 (7.3%) | 1 (0.4%) | 3 (1.3%) | 2 (0.9%) | 9 (3.9%) |
| 2021 | 189 | 126 (66.7%) | 14 (7.4%) | 17 (9.0%) | 7 (3.7%) | 11 (5.8%) | 3 (1.6%) | 3 (1.6%) | 1 (0.5%) | 7 (3.7%) |
| 2022 | 142 | 99 (69.7%) | 9 (6.3%) | 10 (7%) | 6 (4.2%) | 2 (1.4%) | 3 (2.1%) | 5 (3.5%) | 4 (2.8%) | 4 (2.8%) |

<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 4.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개시(산업통상자원부)

◇ **올해 하반기 수소특화단지 최초 지정 목표**

## 1 추진근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 수소법 ')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1조

○ **수소사업자 및 지원시설의 집적화**와 **수소전기차·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수소법 제22조)

## 2 주요내용

○ **(신청주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신청기간)** 2024.05.1(수) ~ 06.28(금) 18:00

○ **(제출서류)**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육성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 **(신청방법)**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

## 3 지정요건(수소법 시행령 제28조)

○ 수소산업 사업자 간 **집적화를 이루고 있거나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 것

○ **기반시설**(교통, 통신 등)**이 갖춰져 있거나 계획*에 포함**돼 있을 것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계획

○ 지역의 **주요 산업**과 **수소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 국가 수소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을 것**

○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 고시 가능

## 4 향후일정

○ **(검토·평가)** 지자체의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에기평), **평가위원회 평가** 등 진행 (발표평가 추진)

○ **(심의·의결)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단지 지정**

**< 추진일정(안) >**

|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 | | 제출서류 검증 | | 검토 | | 심의 | | 관보 고시 |
|---|---|---|---|---|---|---|---|---|
| 육성계획서 수립·제출 | ⇨ | 제출서류 확인 및 지정요건 검증 (현장조사 등) | ⇨ | 목표,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타당성 검토 | ⇨ | 수소특화단지 지정 상정안건 심의·의결 | ⇨ | 특화단지 지정 고시 및 결과통보 |
| 광역자치단체장→ 산업통상자원부 | |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에기평) | | 평가위원회 (시행령 제30조) | | 수소경제 위원회 | | 산업통상자원부 →광역자치단체장 |
| ~6月 말 | | 7月 | | 7~8月 | | 9月 중 | | 10月 중 |

* 상기 일정은 단계별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5 평가기준

| 평가 요소 | 평가 지표 | 평가 기준 | 배점 | 비고 |
|---|---|---|---|---|
| 필수 요소 (80) | 수소산업 집적도 | 수소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집적화된 지역이거나, 수소분야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 확정 등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 | 20 | 정량 |
| | 기반 시설 확보 |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이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 20 | 정성 |
| | 지역 산업 연계가능성 | 특화단지 지정 신청 분야가 지역내 주요 산업과의 관련성이 높으며, 연계 산업 발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지역 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 20 | 정성 |
| | 파급효과 | 국가 수소 정책목표와의 부합성이 높으며, 전국 단위 수소산업 생태계와의 연계를 통한 산업성장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 20 | 정성 |
| 고려 요소 (20) | 성장 가능성 | 특화단지 육성 목표와 중장기 발전 전략이 실현가능하게 제시되어 있고, 재원(財原) 확보 방안이 제시된 지역 | 5 | 정성 |
| | 지자체 추진의지 | 부지 확보, 건축 인·허가, 전담 조직 구성 등 단계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배후지역의 정주여건 확보 또는 개선계획이 제시된 지역 | 5 | 정성 |
| | 지역 수용성 | 후보지 인근 주민(또는 기업)대상의 사업설명회 개최, 지방의회 유치동의 확보 등 지역 수용성이 확보된 지역 | 5 | 정성 |
| | 전문인력 확보 방안 | 특화단지 성장에 필요한 기술인력 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과의 협력 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된 지역 | 5 | 정성 |
| 합 계 | | | 100 | - |

※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계획 실무설명회'에서 별도 안내 예정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에너지수소산업과]

○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2050 선도, 그린수소 산업 중심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 아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도시 조성,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임

○ 「수소법」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사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

*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강원 동해·삼척/'24~'28/총사업비 3,177억원)
수소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경북 포항/'24~'28/총사업비 1,918억원)

○ 이를 위해 「수소법」 시행령을 개정('24.4.9)하여, 수소산업 집적지만 지정이 가능하였던 **지정요건**을 **집적지 외에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음

○ 전북자치도는 공모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바, 미래먹거리 산업인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5.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 동향(통계청)

◇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 동향

□ 생산

○ **광공업생산**은 식료품(3.6%), 섬유제품(42.5%) 등이 늘었으나, 금속(-22.6%), 기타기계장비(-14.9%) 등이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3.8% 감소**

○ **서비스업생산**은 교육(3.7%), 보건·복지(3.1%) 등이 늘었으나, 도소매(-6.1%), 부동산(-9.4%) 등이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0.7% 감소**

□ 소비 · 건설

○ **소매판매**는 대형마트(0.4%) 등이 늘었으나, 전문소매점(-6.5%), 승용차·연료소매점(-7.6%) 등이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5.3% 감소**

○ **건설수주**는 주택 등 건축(-73.3%), 도로·교량 등 토목(-10.2%)이 모두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62.3% 감소**

□ 수출입

○ **수출**은 기타 음식료 소비재(21.1%), 기타 금속제품(105.1%) 등이 늘었으나, 철강봉·형강(-96.9%), 비철금속(-26.5%) 등이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10.3% 감소**

○ **수입**은 기타 유기화합물(18.3%), 항공기(9,435.1%) 등이 늘었으나, 비철금속 (-55.4%), 목제(-40.6%) 등이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10.0% 감소**

□ 고용

○ **고용률**은 15~29세(-0.8%p), 40대(-0.6%p) 등에서 하락하였으나, 60세이상(3.2%p), 50대(1.4%p) 등에서 올라 전년동분기대비 **1.3%p 상승**

○ **실업률**은 30~59세(0.1%p)에서 상승하였으나, 15~29세(-1.9%p), 60세이상(-0.4%p) 등에서 내려 전년동분기대비 **0.3%p 하락**

□ 물가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2.3%), 화장품(-0.6%) 등이 하락하였으나, 농산물(18.3%), 외식제외개인서비스(3.1%) 등이 올라 전년동분기대비 **2.9%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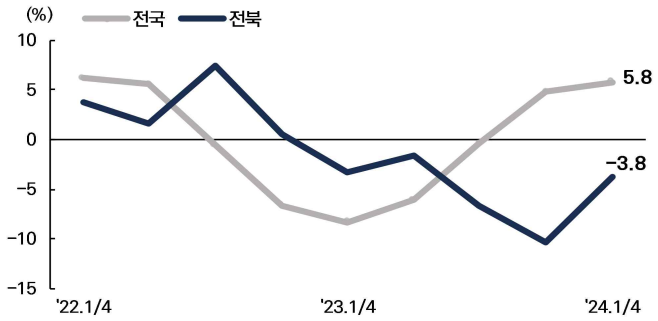
□ 국내 인구이동

○ **인구**는 60~64세(162명), 50~54세(136명) 등에서 유입되었으나, 20~24세(-1,730명), 25~29세(-975명) 등에서 유출되어 **2,715명 순유출**

#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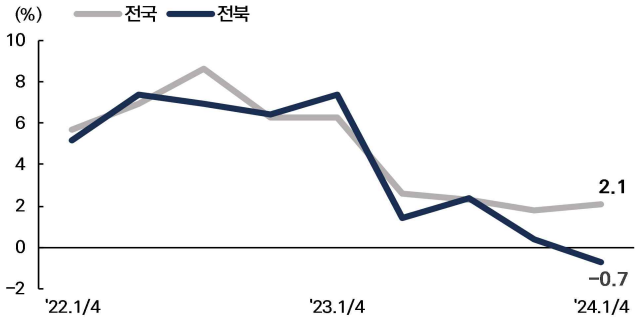
## 광공업생산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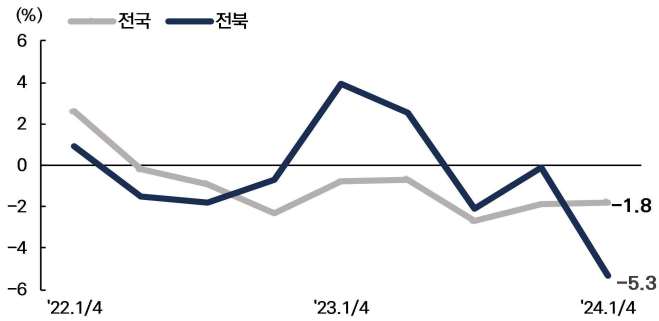

## 서비스업생산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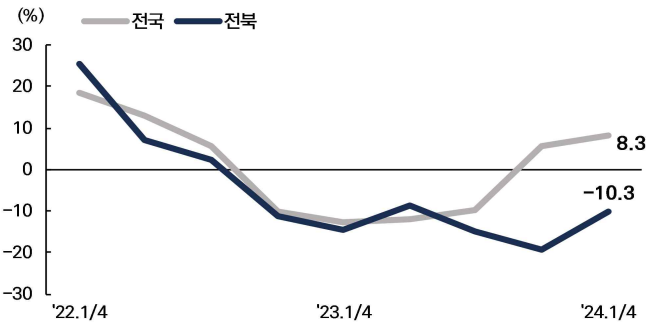

## 소매판매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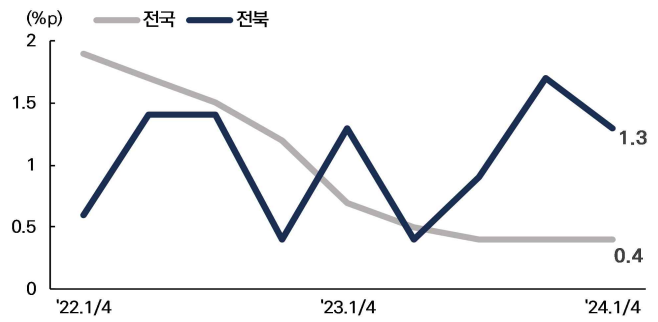

## 수출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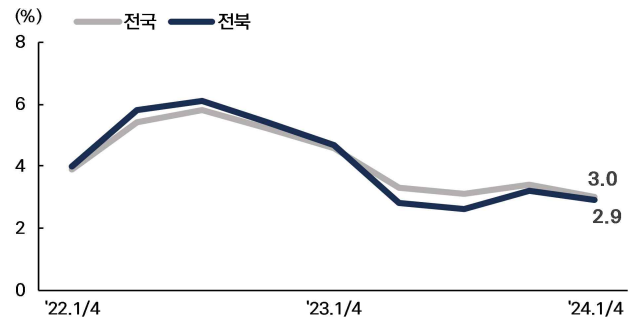

## 고용률

[전년동분기대비 증감]




## 소비자물가

[전년동분기대비 등락률]




[전년동분기대비, %, %p, 명]

| 주 요 지 표 | 2022 2/4 | 2022 3/4 | 2022 4/4 | 2023 1/4 | 2023 2/4 | 2023 3/4 | 2023 4/4 | 2024 1/4 |
|---|---|---|---|---|---|---|---|---|
| 광공업생산지수 | 1.6 | 7.5 | 0.5 | -3.3 | -1.6 | -6.6 | -10.4 | -3.8 |
| 서비스업생산지수 | 7.4 | 6.9 | 6.4 | 7.4 | 1.4 | 2.4 | 0.4 | -0.7 |
| 소매판매지수 | -1.5 | -1.8 | -0.7 | 3.9 | 2.5 | -2.1 | -0.1 | -5.3 |
| 건설수주 | 39.2 | 8.2 | -48.5 | 69.3 | -8.3 | -41.6 | 0.4 | -62.3 |
| 수출 | 7.2 | 2.4 | -11.2 | -14.5 | -8.7 | -15.0 | -19.4 | -10.3 |
| 수입 | 13.0 | 8.3 | -9.4 | -7.4 | -13.4 | -21.7 | -19.4 | -10.0 |
| 고용률(%p) | 1.4 | 1.4 | 0.4 | 1.3 | 0.4 | 0.9 | 1.7 | 1.3 |
| 실업률(%p) | 0.3 | 0.0 | 0.5 | -0.1 | 0.3 | 0.2 | -0.1 | -0.3 |
| 소비자물가 | 5.8 | 6.1 | 5.4 | 4.7 | 2.8 | 2.6 | 3.2 | 2.9 |
| 인구 순이동(명) | -1,005 | -1,557 | -375 | -1,764 | -881 | -1,065 | -747 | -2,715 |

*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지수, 건설수주, 수출, 수입의 최근 수치는 잠정치임

〈2024년 1/4분기 주요 지역경제 지표〉

(전년동분기비, %, %p)

| | 광공업생산 | 서비스업생산 | 소매판매 | 수출 | 고용률 | 소비자물가 |
|---|---|---|---|---|---|---|
| 서 울 | -3.7 | 2.3 | -2.8 | -1.8 | 1.2 | 3.1 |
| 부 산 | -3.9 | 1.0 | -2.6 | -6.7 | 0.1 | 3.3 |
| 대 구 | -2.0 | 1.5 | -0.5 | -20.2 | -1.0 | 2.7 |
| 인 천 | 22.8 | 5.9 | 0.4 | 13.4 | 0.4 | 3.3 |
| 광 주 | 1.9 | 2.7 | -3.3 | -3.3 | 1.8 | 3.2 |
| 대 전 | 1.8 | 2.0 | -0.4 | 6.0 | -1.0 | 3.0 |
| 울 산 | 0.0 | 2.8 | -6.8 | 5.2 | -0.4 | 3.1 |
| 세 종 | 6.0 | -3.9 | 0.1 | 34.8 | -0.2 | 2.8 |
| 경 기 | 30.9 | 0.2 | -5.5 | 28.0 | 0.2 | 2.9 |
| 강 원 | -8.2 | -1.5 | -5.1 | 25.2 | -0.4 | 2.9 |
| 충 북 | -6.3 | -1.1 | -0.9 | -13.1 | 0.6 | 3.0 |
| 충 남 | -3.1 | -2.4 | -3.0 | 12.2 | -0.3 | 2.7 |
| **전 북** | **-3.8** | **-0.7** | **-5.3** | **-10.3** | **1.3** | **2.9** |
| 전 남 | -3.0 | -0.8 | -5.2 | 7.4 | -0.7 | 3.4 |
| 경 북 | -2.9 | -1.4 | -4.3 | -9.8 | 0.8 | 3.0 |
| 경 남 | 3.3 | -1.9 | -3.2 | 18.4 | 1.1 | 3.1 |
| 제 주 | -4.7 | -3.0 | -1.8 | 14.8 | 1.3 | 2.3 |
| 전 국 | 5.8 | 2.1 | -1.8 | 8.3 | 0.4 | 3.0 |

# 6. 자율형 공립고 2.0 추가선정 계획 (교육부)

◇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및 각종 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1 추진 배경

○ 디지털 대전환 및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라, 모든 학생을 미래 사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공교육 혁신 시급

○ 자연적 인구감소 및 사회적 인구 유출 등 지역 소멸 위기 가속화에 따라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 증대

## 2 자율형 공립고 2.0 주요내용

### ○ 자율형 공립고 2.0 개요

- (개념) 농산어촌·원도심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 자율적 교육 모델 운영을 통한 교육혁신을 실현하는 학교
- (기본방향) 지역별 다양한 상황·특성·요구 등을 바탕으로 자공고 2.0 모델을 창출, 우수사례를 일반고로 확산(교육발전특구 연계 가능)
- **(운영방식)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및 교육혁신가와의 연계를 통해 **자율적인 교육모델 운영**

### ○ 지원 및 특례사항

- (예산) 교육부·교육청 5:5 대응투자**(총 2억원) 지원**, 지자체 등 협약기관의 추가 재정지원 적극 유도
- (컨설팅) 교육부·시도교육청·전문가 등이 연계하여 자공고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추진
- **(학사운영) 무학년제, 조기입학·조기졸업**, 교과용 도서 활용 예외 등 **특례적용** 및 지역 전문가·대학 교원과 협력 수업 등 가능
- **(교육과정)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부여***하고 협약기관과 연계한 학교별 과목 신설 및 운영 허용

* 일반고 대비 9학점 범위 내(예술 교과(군)는 5학점 이내,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은 4학점 이내)에서 필수이수학점 감축 가능

- (교원인사) **교장공모제 운영, 교사 100% 초빙,** 교육감 재량범위 내에서 **교사를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학생선발) 학교가 소재한 **광역지자체 단위로 모집**, 필요시 학교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 단위 우선선발 가능
- (법령 개정 등) 자공고 2.0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시·도가 원하는 교육모델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추진

## ○ 운영성과 관리

- (자체평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중 **매년 또는 격년 주기 실시**, 학교 자체적인 자공고 운영성과 제고
- (위원회 평가) 교육감 소속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에서 학교의 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

## ○ 자율형 공립고 유형 비교 및 제1차 선정 현황

<자율형 공립고 1.0 및 2.0 비교>

| 구분 | 자율형 공립고 1.0 (2009~) | 자율형 공립고 2.0 (2024~) |
|---|---|---|
| 운영방식 | ▪ 지자체와 협약 체결·운영<br>▪ 학칙,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 ▪ **지자체 및 대학·기업·법인 등**과 협약 체결·운영<br>▪ 협약 이행을 위한 **'협약·운영위원회'** 구성 (학운위 대체 가능) |
| 교육과정 | ▪ 일반고와 동일한 수준 | ▪ **자사고·특목고 수준**의 **자율성** 부여 |
| 교장임용 | ▪ 교육경력이 있는 공무원·교원만 신청 가능 | ▪ **개방형 교장공모제 적용(예정)** |
| 교사배치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별 정원에 맞게 배치 | ▪ 정원의 **100%를 초빙** 임용 가능<br>▪ **교원 추가배정** 및 **산학겸임교사** 임용 지원 가능 |
| 재정지원 | ▪ 교육청별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비 지원 | ▪ 기존 학교운영비 + **특별교부금 및 교육청 대응투자(2억원)**<br>▪ **협약기관 및 지자체 추가 재정지원** 가능 |

<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지역 및 학교 >

| 지역 | 학교명 | 지역 | 학교명 |
|---|---|---|---|
| 부산(2) | 장안고, 경남고 | 충북(4) | 청주고, 청원고, 충주고, 제천제일고 |
| 대구(5) | 포산고*, 강동고, 경북여고, 다사고*, 군위고* | 충남(3) | 금산여고*, 공주고, 서산 대산고* |
| 광주(5) | 수완고*, 상일여고, 광주고, 전남고*, 광주제일고 | 전남(11) | 나주고, 봉황고*, 매성고, 목포고, 여수고*, 도초고, 영암고*, 순천고, 남악고, 광양고, 해남고* |
| 경기(2) | 군포 중앙고*, 파주 운정고 | | |
| 강원(3) | 원주고, 춘천고, 상동고 | 경북(5) | 포항고*, 포항여고*, 울릉고*, 구미고*, 안동여고* |

※ (1차 신청) '23.12.27 ~ '24.2.8 실시, 조건부 선정 학교 포함, * 2024. 2학기부터 운영(9월)

## 3 자율형 공립고 2.0 추가선정 계획

### ○ 선정 개요

- (신청대상) 전국 공립 일반고등학교 및 기존 자율형 공립고
- (신청기간) **'24년**의 경우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 및 지역별 수요를 고려 **2차례 신청 접수, '25년 이후**부터는 **연 1회 지정**

**< '24년 2·3차 신청 및 '25년 이후 신청 개요 >**

| 구분 | '24년 2차 신청 | '24년 3차 신청 | '25년 |
|---|---|---|---|
| 신청 기간 | '24.5.1~6.30<br>※ 교육발전특구 신청기간 고려 | '24.9.1~10.30<br>※ '25년 교육청 교장공모제 계획 수립 기간 고려 | '25.1.1~7.30 |
| 규모 | ('24.9.1 지정) 20교 이내*<br>('25.3.1 지정) 20교 내외<br>* '24년 특교 잔여예산 고려 | ('25.3.1 지정) 20교 내외 | ('26.3.1 지정) 20교 내외 |
| 운영 기간 | '24.9.1~'29.8.31 /<br>'25.3.1~'30.2.28 | '25.3.1~'30.2.28 | '26.3.1~'31.2.28 |
| 기타 | '24.9.1 지정교는 '24년에 한해 예산지원액 절반 감액 | 지정일정 및 규모는 지역별 가수요, '25년 예산 등에 따라 가변 | 지정일정 및 규모는 지역별 가수요, '26년 예산 등에 따라 가변 |

### ○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개요 >**

| 지정·운영 계획서 작성·제출 | ▶ | 운영계획 심의 및 추천 | ▶ | 학교 심사 및 자공고 선정 | ▶ | 자공고 2.0 지정 | ▶ | 자공고 2.0 운영 |
|---|---|---|---|---|---|---|---|---|
| 학교 → 교육청 | | 교육청 → 교육부 | | 교육부 | | 교육청 → 학교 | | 학교 |

## ○ 선정심사 기준

- (심사항목)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협약과 이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변화, 교직원 배치 등 학교운영 전반 확인
- **(심사결과)**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한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조건부 선정', '미선정'**으로 **구분**하여 결과 발표

< 총점별 선정 기준(안) >

| 총점 기준(점) | 선정 내용 | 비고 |
|---|---|---|
| **71~100** | 可(선정) | |
| **41~70** | 조건부 可(조건부 선정) | 조건 이행을 전제로 선정<br>(미 이행시 철회 가능) |
| **0~40** | 不(미선정) | |

## ○ 향후 추진 일정

선정 공모(5.1~6.30) → 선정교 및 희망교 사전연수(5월 4주, 잠정) → 선정위원회 개최(7월 중) → 선정교 컨설팅(7월~) → 3차 선정 공모(9.1~10.30, 잠정)

## 《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교육청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교육협력추진단, 중등교육과]**

○ 자율형 공립고 2.0은 교육부에서 최근 공모한 협약형 특성화고와 유사한 운영 방식을 공립고에 도입하여 지역의 기존 인프라(지자체, 대학, 기업 등)를 활용한 자율적인 교육모델을 개발,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교육혁신을 실현하기 위함

○ 선정심사 기준에 따라 자율형 공립고는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협약이 필수로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행·재정적 지원·협력이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차 공모 준비를 위하여 지난 4. 12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운영 제2차 지정 공모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 제1회 추경예산으로 선정 학교에 대한 대응투자 사업비, 역량강화 연수, 컨설팅 운영비 등 433,055천원을 편성하고 6교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7. K-패스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

◇ K-패스 사업의 교통비 할인정책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 1 관계규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2 추진배경

○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 본격 시행**

-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월(매월 1일 ~ 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 ~ 53.3%*** **적립 후** 익월 **환급**

* 일반(만35세↑) 20% / 청년(만19 ~ 34세) 30%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3%

※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도 K-패스 회원가입 가능

-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 **기준**, **일반인 1.4만원**, **청년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 효과 (**연간 17 ~ 44만원 수준**)

-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 제공**으로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

《 1회당 지출금액 기준 K-패스 적립금액 예시 》

| 1회당 지출금 | | | 1,500원 (서울 시내버스) | 2,000원 (기본요금 + 거리요금 추가 시) | 2,800원 (광역버스 기본요금) | 4,450원 (GTX-A 수서~동탄) |
|---|---|---|---|---|---|---|
| 적립금 | 일반 | 20% | 300원 | 400원 | 560원 | 890원 |
| | 청년 | 30% | 450원 | 600원 | 840원 | 1,340원 |
| | 저소득 | 53.3% | 800원 | 1,070원 | 1,500원 | 2,380원 |

* 1회당 적립금 예시로 1원 단위 올림한 값이며, 60회 이용 총액에 대한 적립금은 다를 수 있음

| | |
|---|---|
| 비고 | 1) 가입 첫 달은 월15회 미만 시에도 환급 / 이후부터는 15회 이상 이용 필수<br>2)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 (고속·시외·공항버스, KTX・SRT 등 제외)<br>3) 지출금액 월 20만원까지는 전액, 20만원 초과분은 50%만 환급률 (20 ~ 53%) 적용<br>* 예시) 월 60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22만원인 경우, 20만원 + (2만원 × 50%)<br>= 21만원에 대해 20 ~ 53% 환급률 적용<br>☞ 인정 범위는 대중교통 요금 변동 추이, 이용 패턴, 재정여건 등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 · 군 · 구 (별첨 참고)
-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필수, 가입 이후,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 적용

* 회원가입 시 주소지 검증을 통해 주민등록 여부 확인

-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 · 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 (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 (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

* 60회 초과 이용건도 무제한 지원, 청년 범위 확대 (만19세 ~ 34세 → 만19세 ~ 39세)

** 60회 초과 이용건도 무제한 지원, 청년 범위 확대 (만19세 ~ 34세 → 만19세 ~ 39세), 65세 이상 추가 지원 (20% + 10% = 30% 환급)

○ **발급 카드**에 따른 **환급** (카드사별 상이)

-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
-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 (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 (korea-pass.kr)을 통해 확인*

* 다만, 카드사와 교통카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여건에 따라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한 날짜보다 최소 3일 ~ 최대 2주 늦게 표출될 수 있음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계속) 추가경정예산 편성

○ 사 업 비 : 646백만원(국비 323, 시·군비 323) ※ 국비 50%, 시군비 50%

○ 사업규모 : 6개 시 · 군

○ 증감사유 :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비 지출액 적립방식 변경에 따른 국비 지원금 조정(<기존>15 ~ 36.6% → <변경>20 ~ 53%)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종료 후 K-패스 사업으로('24.5.1.) 통합 운영

→ 도내 K-패스 미참여 시 · 군 **농촌 및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 중

《 K-패스 미참여 시·군 교통모델 사업 현황 》

| 지역 | 명칭 | 면허종류 | 차량형태 | 운행방식 | 운행구간, 이용시간, 이용방법 | 노선 | 운행대수 | 운임요금 | 환승할인여부 |
|---|---|---|---|---|---|---|---|---|---|
| 김제시 | 행복콜택시 | 일반면허 | 택시 | 수요응답형 | 대죽마을 등 154개 마을<br>주6회 08:00~17:00, 택시기사와 직접통화 | - | 42대 | 기본 1,000원 | X |
| 진안군 | 행복버스 | 한정면허 | 11인승승합 | 수요응답형 | 면별 면사무소↔마을회관<br>주6일 07:00~18:00, 전용 콜센터 예약 | - | 13대 | 기본 1,000원 | ○ |
| | 행복택시 | 일반면허 | 택시 | | 6개 면 155개 마을<br>주6일 07:00~18:00, 전용 콜센터 예약 | - | 8대 | | X |
| 무주군 | 행복버스 | 한정면허 | 11인승승합 | 노선형 | 무풍, 부남, 구천동<br>매일 07:00~18:00, 전용 콜센터 예약 | 3 | 4대 | 기본 1,000원 | ○ |
| | | | | 수요응답형 | 무주읍, 부남, 안성면<br>매일 07:00~18:00, 전용 콜센터 예약 | - | 3대 | | |
| | 행복택시 | 일반면허 | 택시 | 수요응답형 | 하장백마을 등 58개 마을<br>매일 07:00~19:00, 전용 콜센터 예약 | - | 47대 | 기본 100원 | X |
| 장수군 | 행복콜버스 | 한정면허 | 11인승승합 | 수요응답형 | 190개 마을<br>매일 07:00~18:00, 전용 콜센터 예약 | - | 8대 | 청소년 500원<br>성인 1,000원 | ○ |
| | 행복콜택시 | 일반면허 | 택시 | | | - | 30대 | | X |
| 임실군 | 행복콜버스 | 한정면허 | 15인승버스 | 수요응답형 | 운암, 강진, 덕치 32개 마을<br>매주 월요일 및 장날, 07:00~18:00<br>전용 콜센터 예약 | - | 3대 | 청소년 500원<br>성인 1,000원 | X |
| | 행복콜택시 | 일반면허 | 택시 | 수요응답형 | 11개 읍면, 47개마을<br>매주 월요일 및 장날, 06:00~18:00<br>전용 콜센터 예약 | - | 33대 | 1인 2,000원,<br>4인 500원 | X |
| 순창군 | 행복콜버스 | 한정면허 | 15인승버스 | 수요응답형 | 복흥,쌍치,구림면 61개 마을<br>매일 07:00~19:00, 전용 콜센터 예약 | - | 3대 | 기본 1,000원 | ○ |
| | 행복콜택시 | 일반면허 | 택시 | 수요응답형 | 복흥,쌍치,구림면 61개 마을<br>매일 07:00~19:00, 전용 콜센터 예약 | - | 7대 | 기본 1,000원 | |
| | 마을택시 | 일반면허 | 택시 | 수요응답형 | 읍·면 50개 마을<br>마을-면소재지,읍소재지<br>매일 06:00~21:00, 전용카드 지급(월 4회 이용) | - | 43대 | 기본 1,000원 | X |
| 고창군 | 행복버스 | 한정면허 | 15인승버스 | 노선형 | 양계리 등 13개 리 40개 마을<br>평일 07:00~19:00 | 16 | 1대 | 청소년 500원<br>성인 1,000원 | ○ |
| | | | | | 무림리 등 12개 리 25개 마을<br>평일 07:00~19:00 | 14 | 1대 | | |
| | 행복콜택시 | 일반면허 | 택시 | 수요응답형 | 내동마을 등 159개 마을<br>매일 상시운행, 택시기사와 직접통화 | - | 43대 | 기본 1,000원 | X |
| 부안군 | 위도행복콜버스 | 한정면허 | 11인승승합 | 수요응답형 | 위도면 11개 마을<br>매일 07:00~22:00, 택시기사와 직접통화 | 1 | 1대 | 기본 1,500원 | X |
| | 행복택시 | 일반면허 | 택시 | 수요응답형 | 9개 읍면 53개 마을<br>주 3일, 07:00~18:00, 택시기사와 직접통화 | - | 35대 | 기본 1,000원 | X |

## 참고 K-패스 참여 지자체

| '24.5월 기준 | | 기초 시군구(총 229개) | | |
|---|---|---|---|---|
| 권역 | 광역(기초 수) | '24년 참여(189개)<br>='23년(176개) + '24년 신규(13개) | 미참여(40개) | |
| 수도권 | 서울(25) | 종로('19.10), 강남('19.10), 서초('19.10), 구로('20.4), 중구('20.4) → 서울 전체('20.7) | - | |
| | 인천(10) | 인천 전체('19.6) | - | |
| | 경기(31) | 수원('19.6) → 경기 전체('19.7) | - | |
| 충청권 | 대전(5) | 대전('19.6) | - | |
| | 세종(1) | 세종('19.6) | - | |
| | 충북(11) | 청주('19.6), 옥천('20.1), 제천('21.1), 충주('23.1), 음성·진천·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24.5) | - | |
| | 충남(15) | 아산·천안('20.4) → 충남 전체('22.1) | - | |
| 전라권 | 광주(5) | 광주('19.10) | - | |
| | 전북(14) | 전주('19.6), 익산('20.1), 남원('20.1), 완주('20.1), 군산('20.4), 정읍('22.10) | 10만명~ | - |
| | | | 5~10만명 | 김제, 고창, 부안 |
| | | | ~5만명 |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
| | 전남(22) | 순천('21.1), 무안('21.1), 신안('21.1), 여수·목포·해남('22.1), 광양('22.8), 나주('22.9), 담양('23.1), 장성('24.5) | 10만명~ | - |
| | | | 5~10만명 | 고흥, 화순, 영암, 영광 |
| | | | ~5만명 |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
| 경상권 | 부산(16) | 부산('19.6) | - | |
| | 대구(9) | 대구 전체(군위군 편입('23.7)) | - | |
| | 울산(5) | 울산('19.6) | - | |
| | 경북(22) | 포항('19.6), 영주('19.6), 경주('20.1), 김천('21.1), 영천('21.1), 구미, 상주('22.1), 칠곡('22.9), 경산, 안동('23.1) | 10만명~ | - |
| | | | 5~10만명 | 문경, 예천, 의성 |
| | | | ~5만명 |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
| | 경남(18) | 양산('19.6), 거제·김해·밀양·산청·진주·창녕·창원('20.1), 통영·고성('20.4), 사천·함안('22.1) → 경남 전체('23.1) | - | |
| 기타 | 강원(18) | 춘천('21.6), 강릉('22.1), 원주('22.6), 홍천·양양('23.7), 동해·삼척·태백·횡성·영월('24.5) | 10만명~ | - |
| | | | 5~10만명 | 속초 |
| | | | ~5만명 |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 | 제주(2) | 제주('21.1), 서귀포('21.1) | - | |

※ 기초 시군구 숫자(229개)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1.12.31)'자료의 226개 기초 지자체 수에 세종시 및 제주도 제주·서귀포시(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구분 집계한 숫자(226+3)

#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 1.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확대(경기도)

◇ 6-18세 어린이, 청소년에게 수도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요금 환급

### 1 추진배경

○ K-패스 및 The 경기패스 등 성인에 집중된 교통비 지원 혜택 속 교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혜택 제공 필요

###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 (지원금액) 사용한 교통비의 분기별 6만원 연간 24만원 한도내 100%지원

○ (지원내용)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

-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그)해 이용하는 교통 수단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 에서 신청
- 경기교통공사 콜센터(☎ 1577-8459)에 전화로 신청

○ (등록카드) 별도의 카드를 발급 없이 본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

○ (지원기한) 한 번 신청하면 당해 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 자동 연장

○ (신청시기) 2024년 5월 2일부터

※ (참고) The 경기패스 주요 내용
-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
-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줌
-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

##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교통정책과)

○ 전북자치도는 어린이와 청소년 전체를 위한 교통비 지원 대책은 없으나 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고, ②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도 하고 있으며, ③ **시군 자체적으로 중고등학생에 대한 버스요금 감면을 시행**하거나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 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비 지원

- 전북자치도는 도 센터와 9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카드(밖꿈)를 2020년부터 지원하고 있음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순창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여성가족부가 9~24세 '학교 밖 청소년' 2천 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학교밖 청소년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지원책은 '교통비 지원'(4점 만점 중 3.33점) 이었음

#### ②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 전북자치도는 '23년도에 도내 **농·어촌 지역(읍·면)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동일 생활권에서 생활하며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을 13개 시군(전주시 제외) 3,4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올해도 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음

<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연도별 추진상황 >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비고 |
|---|---|---|---|---|---|---|---|---|---|
| 이용자수 | 1,298 | 1,520 | 1,627 | 1,800 | 1,850 | 2,256 | 2,443 | 3,488 | |
| 예산액 | 900 | 900 | 1,200 | 1,641 | 1,863 | 1,863 | 2,235 | 2,968 | |

<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시군별 이용자수(2023년) >

(단위 : 명)

| 시군 | 계 | 군산 |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 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 순창 | 고창 | 부안 |
|---|---|---|---|---|---|---|---|---|---|---|---|---|---|---|
| 이용자수 | 3,488 | 108 | 150 | 651 | 215 | 94 | 205 | 596 | 272 | 146 | 428 | 287 | 186 | 150 |

### ③ 시군 자체적으로 중고등학생에 대한 버스요금 감면 시행

- 군산시는 '23.11.20.부터 고등학생은 무료요금을 시행하고 있고, 중학생은 '24.9월부터 무료요금 시행 예정이며, 익산시는 '25.1월부터 중·고등학생 100원 요금을 추진할 계획임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중고등학생의 버스 이용요금은 500원, 부안군은 100원임. 중고등학생이 매일 등교한다고 하면, 경기도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The 경기패스의 지원금(1년 24만원)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 전북자치도내의 청소년들이 모두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 있음

※ 학생 수가 많은 전주시와 완주군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대책마련 필요

## 참고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고등학생 버스요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학생기본요금 | 시·군지원요금 | 현재이용요금 | 비고 (시행시기) |
|---|---|---|---|---|
| 전주시, 완주군 | 1,200 | - | 1,200 | 미정 |
| 군산시 | 1,300 | - | 1,300 | 고교생 무료 (`23.11.20.) |
| 익산시 | 1,300 | - | 1,300 | `25.1월 100원 버스 |
| 정읍시 | 1,300 | 800 | 500 | '19.1월 |
| 남원시 | 1,250 | 750 | 500 | '19.1월 |
| 김제시 | 1,300 | 800 | 500 | '18.10월 |
| 진안군 | 1,300 | 800 | 500 | '15.2월 |
| 무주군 | 1,300 | 800 | 500 | '14.10월 |
| 장수군 | 1,300 | 800 | 500 | '15.3월 |
| 임실군 | 1,300 | 800 | 500 | '15.10월 |
| 순창군 | 1,300 | 800 | 500 | '16.3월 |
| 고창군 | 1,300 | 800 | 500 | '18.2월 |
| 부안군 | 1,300 | 1200 | 100 | '18.2월 |

※ 군산시 `23.11.20.부터 고등학생 무료요금 시행(중학생 `24.9월 시행 예정)

※ 익산시 `25.1월 중.고등학생 100원 요금 추진 예정

지하철도 된다! 어린이도 된다!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6 - 18세 경기도거주자라면 누구나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연간 **24만원**(분기6만원) 한도 교통비 실사용액의 **100% 지원**
※ 교통카드 태깅 기준(탑승권을 통한 교통 이용 실적은 제외)

**준비물**
1. 대중교통을 이용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2.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3. 간편/금융/공동 **인증서**

**※ 문의 : 1577-8459**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2. 전남형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전라남도)

◇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고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점가 개소당 1억원 지원**

## 1 추진배경

○ 상인들이 주도해 직접 모색하고 시도하는 성장 기반 마련

○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권 발굴 및 상인회 구성 지원, 상점가 브랜드 발굴 및 매출향상 및 고객 증진 효과를 위한 각종마케팅 등 상권활성화 사업 시행·지원

## 2 주요내용

○ (근　　거)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시군 골목상권 활성화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골목형 상점가

○ (사 업 비) 3억(도비 90백만원, 시군비 210백만원)/개소당 1억

○ (상권발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특색 있는 상권 발굴 및 상인회 구성 지원

○ (역량강화)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점포 컨설팅 등 상인역량강화 교육

○ (상권특화) 상권 및 점포 대표 특화상품 개발 및 상권 공동 BI구축 등

○ (상권마케팅) 고객유인 및 소비촉진행사, 홍보·마케팅, 축제 등 이벤트 등
※ 행사 개최와 무관한 사업(임대료, 운영비, 시설개선 등)은 대상에서 제외

## 3 기대효과

○ 상권 발굴 및 상인회 구성 지원, 상점가 브랜드 발굴 및 매출향상 및 고객 증진 효과

○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공모사업 신청 가능, 차별화된 상권 개발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일자리민생경제과)

○ 전북자치도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외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추진 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상권활성화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국비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2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보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전북자치도에는 전통시장 59개소, 상점가 20개소, 골목형 상점가 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바, 전통시장 지원과 함께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골목 상권 육성을 위한 자체 사업 수립이 필요함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전통시장 와글와글시장가요제 홍보,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등

○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지원을 통하여 골목상권을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시비: 700백만원)
경 기 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노후상가거리 활성화, 희망상권 프로젝트)
골목공동체 대학협업 (미술·예술전공 등, 총10개소 1곳당 2천만원)
인천광역시: 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골목상권 공동체 15개소 내외)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신규 5개소, 계속 15개소)
대학생 골목상권 마케터즈 지원사업(60개팀)
경 상 남 도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간판정비, 안전보행로 조성, 스마트가로등 설치)

○ 또한 경기도,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골목상권 서포터즈 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전문 컨설턴트 멘토링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자립화를 돕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 대비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향후 산학협력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학점 및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공지식을 활용한 컨설팅 및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함

# 3. 청년, 이사비+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 **2022년 1월 1일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에게 이사비 중개수수료를 최대 40만원 지원하여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

## 1 추진배경

○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6,000명(상반기 4,000명, 하반기 2,000명 모집)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연령)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84.1.1.~'05.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참여 제한대상 ※ 신청시 기준

- '22.1.1.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중복수혜 불가 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市 자치구)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 단, 타 기관에서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해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반대도 동일)
(예시)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원 수혜자 → 市 이사비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기대효과

○ 학업, 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청년정책과, 주택건축과, 농촌활력과)**

○ 전북자치도는 주거분야 청년 정책으로 청년정책과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택건축과의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임대주택 임대보증금지원, 농촌활력과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현황('24.3.20)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 40세 미만이 73% 정도이고, '24. 5월 현재까지 전세사기로 8명이 사망하였음

○ 주거취약 계층인 청년의 주거 분야 지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 청년의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도 필요함


2024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원
청년몽땅정보통
2024. 4. 2.(화) ~ 4. 19.(금)
지원대상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 월세 거주 무주택자
지원내용 * 생애 1회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중 한가지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
신청기간
2024. 4. 2.(화) ~ 4. 19.(금)
선정인원
상반기 4,000명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신정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youth.seoul.go.kr)
※ 방문 우편 접수 등 불가
문의사항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콜센터
☎ 1877-9358

# 4. 자동차정비업소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정비 장비 지원(경기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검사를 위한 장비개선 비용 최대 250만원(업체당) 지원**

## 1 추진배경

○ 경기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2020년 21만 대에서 2023년 52만 대로 증가했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경기도 포함 전국 1천517개소(자동차 제작자 직영정비소)로 부족한 실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 정비 기반 구축 기대

## 2 주요내용

○ (관련근거)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사업기간 / 사업량) 2024. 4. ~ 2024. 12. / 100개소

※ 사업량은 신청·접수 등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점검 장비개선 지원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진단 가능한 장비(**자동차 고장 진단기**) 지원

나. 안전한 배터리 탈부착 등 정비 작업을 위한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 내 등록·운영 중인 자동차 정비사업장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취득자**

*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교육(경기도), 고전압 안전교육(국가) 등

** 전기자동차 정비 플러스자격증(국가), 그린전동자동차기사(국가), EV고전압안전관리자(민간) 등

○ (지원 제외 대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제3항에 따라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 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br>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된 경우 |

○ (보조기준) 도비 50%(최대 2,500천원), 자부담 50% 이상

○ (지원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검사를 위한 장비개선 비용

## 3 기대효과

○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속 증가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정비·점검 장비개선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자의 편의성(접근성, 정비시간 등) 향상을 도모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생활환경과, 교통정책과]

○ 전북자치도 교통정책과는 「2024년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신기술 교육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신기술 관련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사업규모 : 1개 단체
-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신기술 교육(이론·실무)
- 교육과정 : 총 4회 운영하되 기수별 25명씩 8시간 교육

| 구 분 | 교육인원 | 교육시간 | 교육차수 | 비고 |
|---|---|---|---|---|
| 이론교육 | 25명/기 | 8시간/기 | 4회 | |
| 실무교육 | 25명/기 | 8시간/기 | 4회 | |

- 교육내용 : 친환경 자동차 정비에 대한 이론 및 실무교육 병행

| 구 분 | 3시간 | 3시간 | 2시간 | 비고 |
|---|---|---|---|---|
| 이론교육 | 전기자동차<br>기본개요 | 전기자동차<br>구조시스템 | 정비(검사) 안전<br>기초 실무 | |
| 실무교육 | 전기자동차 시스템 및<br>하이브리드 정비실무 | 전기자동차 고전압<br>배터리 등 정비실무 | 전기자동차 검사<br>실무 | |

##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

○ 전북자치도의 친환경차 등록은 매년 증가하여 '24년 3월 현재 2.31%에 달하고 있음. 2018년 대비 20배 상승한 수치로, 친환경차에 대한 정비 부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의 자동차 정비업소 및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소폭 줄어들었음*.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미래차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전기차가 점차 확대되면 내연기관 부품 중심의 정비 수요가 30%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

○ 기존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친환경 자동차 정비업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인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2년간 전북자치도 자동차 정비업소 및 정비업 종사자 수 현황 >

(단위 : 개소, 명)

| 업종 / 년도 | 정비업소 수 10 | | | | | 종사자 수 | | | | |
|---|---|---|---|---|---|---|---|---|---|---|
| | 종합 | 소형 | 전문 | 원동기 | 소계 | 종합 | 소형 | 전문 | 원동기 | 소계 |
| 2023 | 272 | 54 | 1,411 | 10 | 1,747 | 2,221 | 175 | 2,058 | 28 | 4,482 |
| 2022 | 274 | 51 | 1,440 | 10 | 1,775 | 2,227 | 169 | 2,112 | 26 | 4,534 |

< 전북자치도 최근 7년간 누적 자동차 등록대 수 현황 >

(단위 : 대, %)

| 구분 |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도 | 2023년도 | 2024. 3. |
|---|---|---|---|---|---|---|---|
| 친환경차 계 | 999 | 1,849 | 3,732 | 8,455 | 14,652 | 22,149 | 23,029 |
| 전기차 | 997 | 1,841 | 3,323 | 7,365 | 12,727 | 19,795 | 20,640 |
| 수소차 | 2 | 8 | 409 | 1,090 | 1,925 | 2,354 | 2,389 |
| 전체 등록 차량 | 915,944 | 929,061 | 948,147 | 959,920 | 977,834 | 992,516 | 997,188 |
| 비율 | 0.11% | 0.20% | 0.39% | 0.88% | 1.50% | 2.23% | 2.31%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전국 최초
환경친화적인 운전자를 위해!
경기도, 친환경차* 정비장비 개선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중 '친환경차 정비·안전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친환경차 정비 관련 자격취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 지원 내용 : 사업장 당 정비·검사 장비 개선 비용 최대 25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5월 8~29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 신청
※ 도청 홈페이지 '2024년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 지원계획 공고문' 참고
* '친환경차'란?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또는 연료 전지차

#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1.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국회미래연구원)

**<< 연구요약 >>**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는 높은 수준의 자치권(自治權)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설치되었으나, 법률의 개정 없이 지방세를 확충할 과세자주권이 없으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세외수입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과세자주권을 부여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 과세자주권 없는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변경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함

○ 제주·세종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인 보통교부세·지역균형발전회계 특례가 있지만, 강원·전북에는 보통교부세·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례가 없으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희망함

### □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시 재정특례 현황

#### 1 지방세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동법 제121조),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액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加減)하거나(동법 제122조),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의 세율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특례가 있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제14조제1항)

[표 1]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재정특례 제도 등(2023.12.31.기준)

| 구분 | 제주특별자치도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
|---|---|---|---|---|
| 출범 시기 | 2006.7.1. | 2012.7.1. | 2023.6.11. | 2024.1.18. |
| 근거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법)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법) |
| 총 인구수 | 675,252명 | 386,525명 | 1,527,807명 | 1,754,757명 |
| 소관 | 기초자치단체 없음 | 기초자치단체 없음 | 기초자치단체 있음 | |
| 재정자립도 | 36.9% | 69.7% | 29.4% | 27.9% |
| 재정자주도 | 73.7% | 76.1% | 76.8% | 71.1% |
| 지방세 | - 제주특별자치도세<br>- 대통령령 대신 조례로 결정<br>- 조례로 지방세 감면·세율 조정 | 세종특별자치시세 | - | - |
| 보통교부세 | 보통교부세 총액의 3% | 재정부족액의 25% 이내 추가 | - | -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

※ 주 1: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중에서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임. 2023년 자료임.
※ 주 2: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중에서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임. 2023년 자료임.
※ 주 3: 「강원특별법」은 2024년 6월 8일 시행 예정임. 「전북특별법」은 2024년 12월 27일 시행 예정임.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각 연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 2023을 중심으로 조사관 작성.

## 2 보통교부세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부족액에 관계없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음. 제주특별자치도가 받는 보통교부세는 2007년 5,885억원에서 2024년 1조 7,953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재정부족액의 25% 이내 금액을 추가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받을 수 있음

##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지원을 받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6조).

○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지원을 받음

### 4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현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국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하지만 보통교부세 특례가 없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북특별자치도 계정이 마련되지 않음

[표 2] 보통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단위: 억 원)

| 연도 | 제주특별자치도 | | 세종특별자치시 | | 전체 합계 | |
|---|---|---|---|---|---|---|
| | 보통 | 균특 | 보통 | 균특 | 보통 | 균특 |
| 07 | 5,885 | 3,000 | - | - | 198,421 | 68,000 |
| 08 | 6,816 | 4,000 | | | 227,234 | 79,000 |
| 09 | 7,228 | 4,000 | | | 240,925 | 96,000 |
| 10 | 6,972 | 4,000 | | | 232,403 | 99,000 |
| 11 | 7,730 | 4,000 | | | 257,755 | 98,000 |
| 12 | 8,757 | 4,000 | | | 291,884 | 94,000 |
| 13 | 9,427 | 3,000 | 1,591 | | 314,480 | 99,000 |
| 14 | 9,567 | 3,000 | 1,846 | | 318,845 | 93,000 |
| 15 | 9,656 | 3,000 | 1,749 | 1,022 | 320,509 | 104,000 |
| 16 | 9,963 | 4,000 | 1,286 | 1,037 | 332,438 | 100,000 |
| 17 | 11,252 | 3,000 | 726 | 1,031 | 375,775 | 98,000 |
| 18 | 12,740 | 3,000 | 464 | 1,004 | 424,696 | 99,000 |
| 19 | 14,282 | 3,000 | 498 | 1,035 | 476,026 | 107,000 |
| 20 | 14,018 | 2,000 | 566 | 737 | 467,264 | 92,000 |
| 21 | 13,358 | 2,000 | 678 | 728 | 445,377 | 103,000 |
| 22 | 16,531 | 3,000 | 837 | 716 | 551,042 | 109,000 |
| 23 | 20,003 | 3,000 | 1,257 | 500 | 666,446 | 117,000 |
| 24 | 17,953 | 3,000 | 1,086 | 500 | 598,439 | 138,689 |

※ 자료: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각 연도, 균형발전종합시스템, (최종 검색일: 2024.3.28.), (https://www.nabis.go.kr/).

### 5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의 논의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재정특례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음

- 첫째,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재정부족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도록 재정부족액을 보정해, 특별자치도가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액을 확대하자는 연구가 있음
- 둘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이 없는 강원특별자치도계정과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하자는 연구가 있음

## □ 재정특례 관련 개선과제

### 1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재정특례 원칙 설정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와 중앙정부·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을 염두에 두면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재정특례의 원칙과 방향을 정해야 함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발생할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2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의 세외수입 등 확충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가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거나, 사용료·수수료 등의 요율을 현실화해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임

○ 잠재적 세원(潛在的 稅源)에 머물러 있는 세외수입을 실제 세원화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원(財源)을 발굴하도록 재정특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3 장기적으로 과세자주권 부여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과세자주권을 주는 재정특례를 부여해,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법정외세(法定外稅)를 도입하는 파격적인 방안이 있을 것임. 즉, 법률의 개정 없이 조례를 통해 새로운 지방세 세원(稅源)을 발굴하거나, 지방세 세목 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등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가 과세자주권을 가지게 하는 것임

### 4 국세의 지방세 이양 검토

○ 국세 중에서 적합한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재정특례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예)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해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더 이양하거나, 부동산 양도소득세, 특정장소 입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시사점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변경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함

# 2.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대응 현황과 시사점 (농촌경제연구원)

## ≪ 연구요약 ≫

◇ 주요 산지유통 주체인 농협의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 대응 전략 검토 및 소매유통 부문의 동향과 온라인 유통 확산에 대한 대응 사례 검토

## □ 연구배경

○ 최근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 및 관련 주체의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

○ 이를 위해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을 검토

○ 또한 주요 산지유통주체인 농협의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검토하여 정리하고 디지털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소매유통 부문의 동향과 온라인 유통 확산에 대한 대응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

○ 이와 함께 해외의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농산물 온라인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를 제시

##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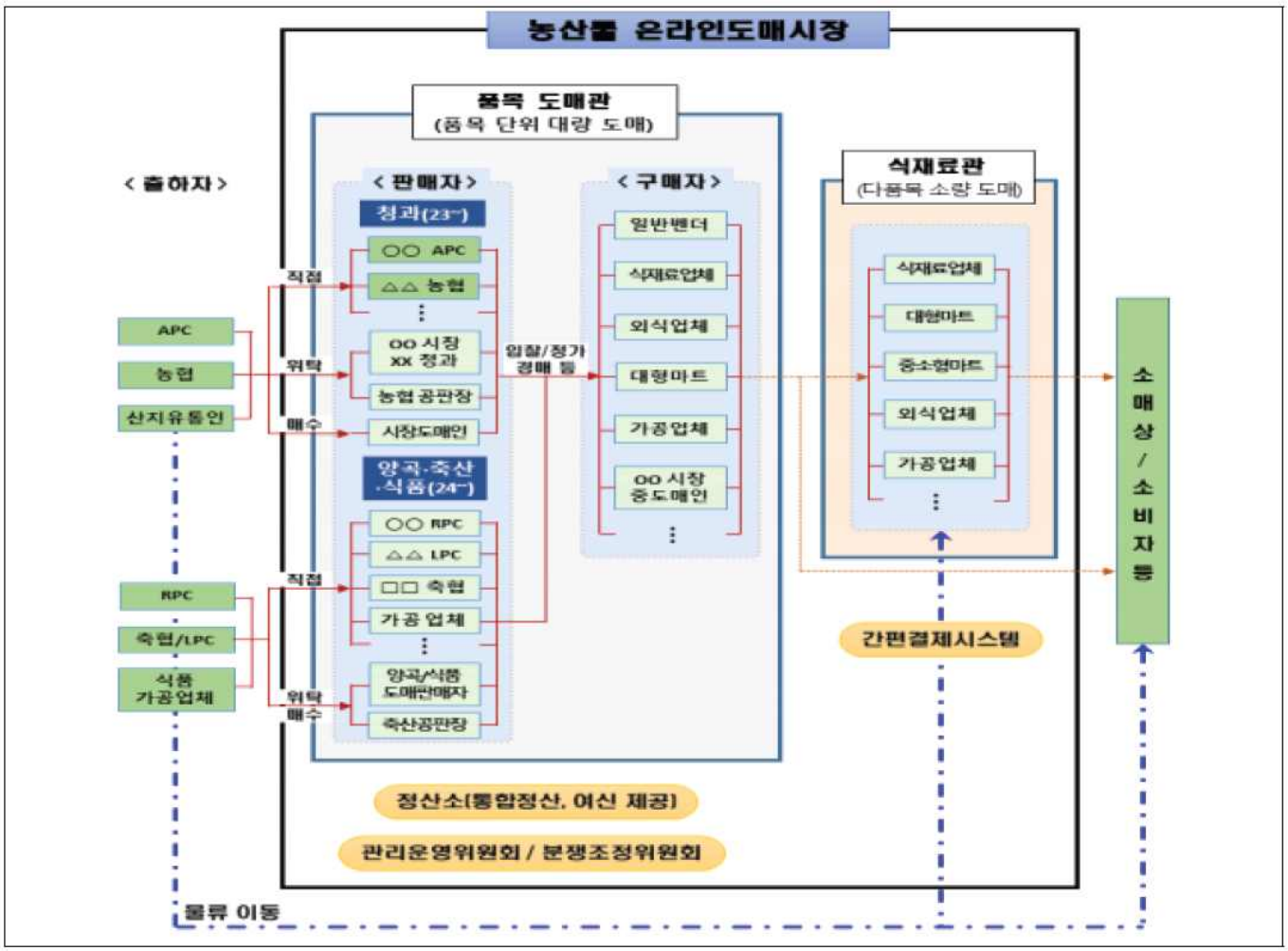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간 융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 부문의 디지털 전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분야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지만 디지털 전환에 따른 다양한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정부는 2023년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농산물 유통 관련 주체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협의 경우 농식품 유통망 개선 및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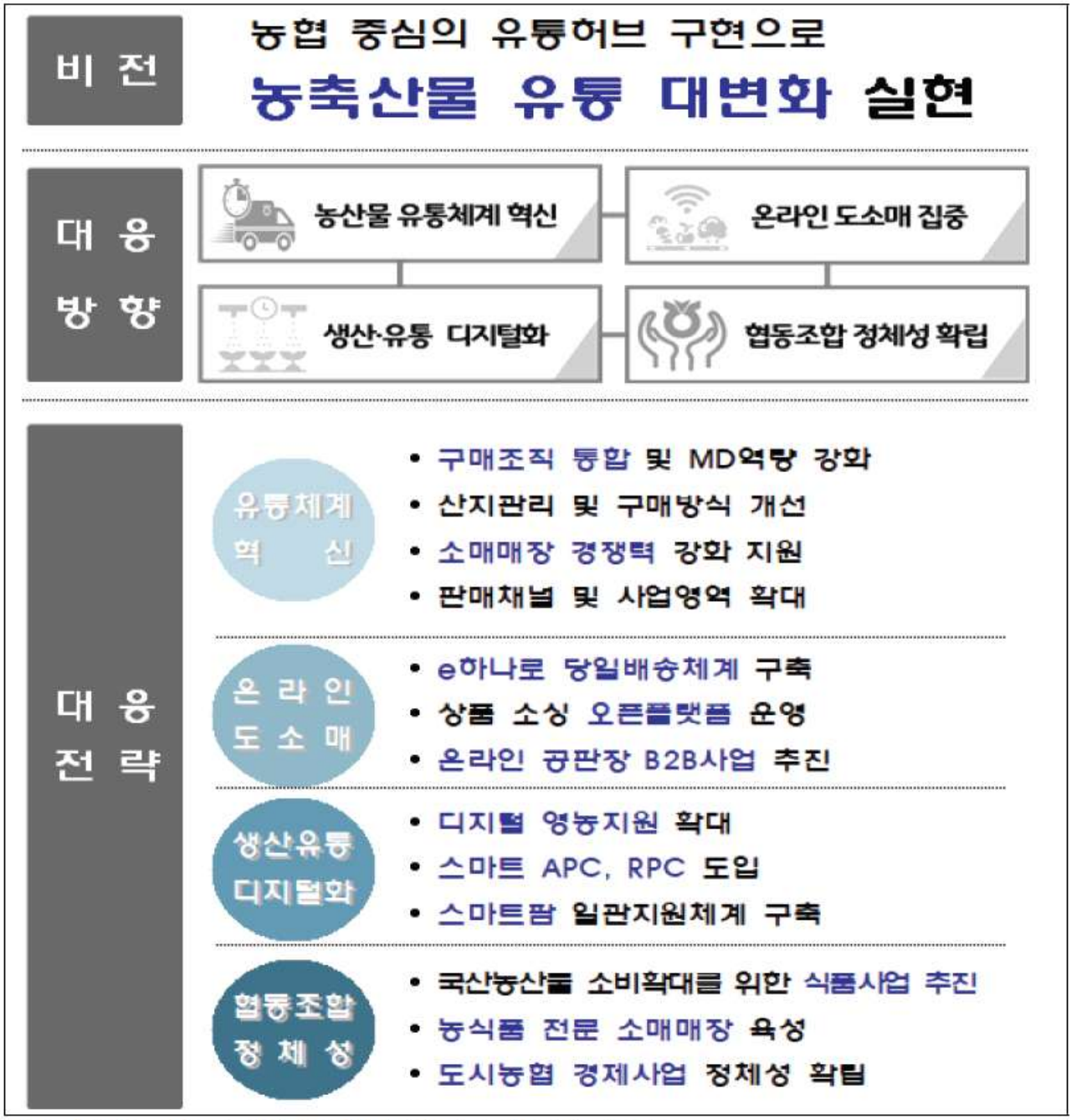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구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3),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전략”, 《신유통토론회(2023. 7.) 발표자료집》.

○ 농협은 ‘농축산물 유통혁신 추진 방안’을 통해 ①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② 온라인 도소매사업 집중 추진, ③ 농산물 생산·유통 디지털화, ④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 등의 대응 방향을 제시함. 이를 위해 온라인 도소매사업 활성화와 농산물의 생산·유통 디지털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

<농협의 농축산물 유통혁신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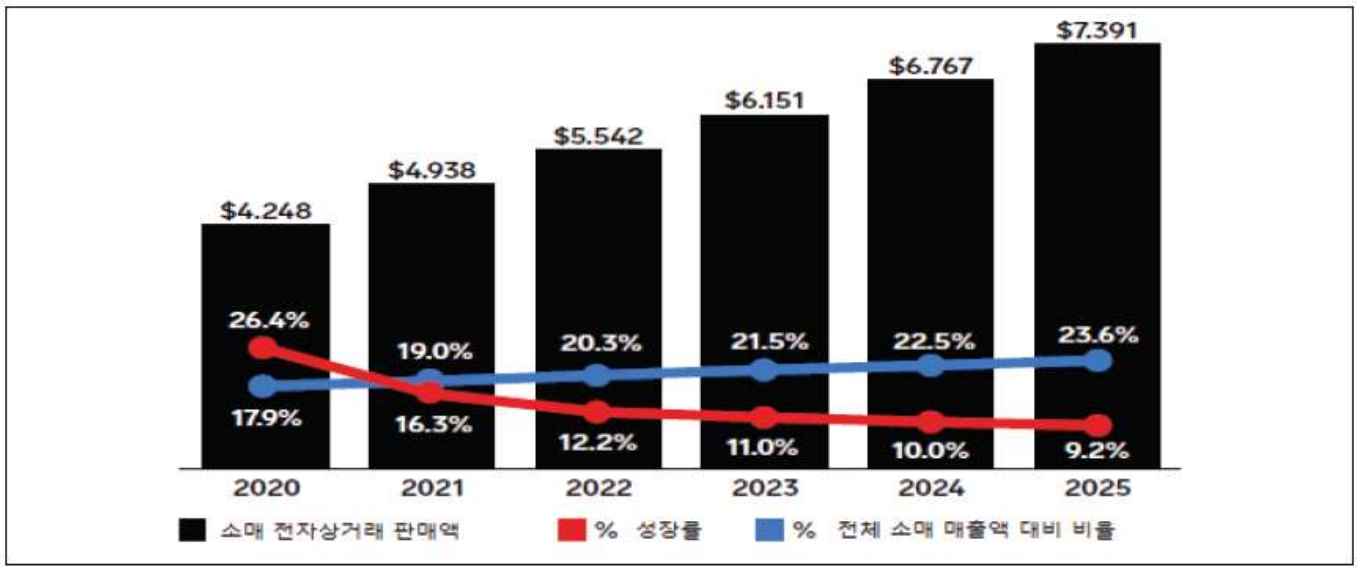

자료: 이천일(2023), 《농산물 유통의 미래와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 우리나라 소매유통 구조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인터넷 및 온라인 유통업체 중심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리테일 테크가 부상함에 따라 소매유통업체들의 온라인 거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유통구조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소농들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접근 강화와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전 세계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온라인 농식품 시장 규모 또한 오프라인 시장에 비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전 세계 소매 전자상거래 판매 전망>




주: 인터넷을 사용하여 주문한 제품 또는 서비스(지불과 이행 방법이 상관없으며, 모든 기기에 대해 포함됨)를 포함하며, 여행 및 이벤트 티켓, 청구서 지불, 세금 또는 송금, 음식 서비스 및 술집 판매, 도박 및 기타 불량품 판매 등은 제외됨.
자료: 이마케터(eMarketer) 홈페이지(https://www.insiderintelligence.com), 검색일: 2023. 10 .12.

○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체별로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거래 확대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

## 《 시사점 》

**1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온라인 거래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 관련 주체들의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 둘째, 산지유통의 핵심 주체인 농협의 대응 전략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산지 중심의 단계별 대응 전략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4 셋째, 국내 소매유통 부문은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거래 확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업태 특성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차별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5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신기술 활용 및 온라인 거래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2024년 지방행정 트렌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분석요약 ≫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분석을 통한 능동적·미래 지향적 대응 전략 준비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지역일자리, 자치역량,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등 8대 트렌드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구체적 방향 설정에 대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 제고 필요

## □ 분석배경

○ 포스트 코로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혁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미래환경변화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능동적·미래 지향적 의사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한 STEEP 분석, 이에 따른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하위 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결과 다음과 같음

<STEEP 분석 결과 종합>

| 구 분 | 구성 요소 | | |
|---|---|---|---|
| 사회적 요인(S) | 인구구조의 변화 | 사회갈등의 증가 |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
| 기술적 요인(T) | 디지털 기술혁신 | 디지털 대전환 | 제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
| 경제적 요인(E) | COVID-19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극복 | 팬데믹 이후 소득양극화 심화 극복 | 디지털 기반 경제구조 전환 |
| 환경적 요인(E)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 자원부족 시대 진입 | 심각한 국제질병 증가 |
| 정치적 요인(P) |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 역할 증대 | 시민주도 공공서비스 제공 | 정부-시민 간 수평적 소통구조 형성 |

○ 미래사회 **주요 이슈** (키워드) 도출

<인구구조> <사이버 범죄>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정치참여>
<사회갈등> <4차 산업혁명> <양극화> <지속가능개발> <지방자치>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와 정책방향

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 장기적 관점 계획수립, 지역사회 협업 활성화, 디지털기술 활용 확대

②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 특성화 산업 기획 단계부터 유관대학 협력체계 구축, 취업-교육 연계성 확보

③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 사회 · 환경 고려 종합적 재난 · 안전관리 접근, 민간 및 지역사회 협력 거버넌스 구축, 신기술 적극 도입 · 활용 통한 재난관리 역량 강화

④ (지역 보건 · 의료와 시민건강)

⇒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 마련, 보건 · 의료 데이터 관리 위한 인력 양성

⑤ (자치역량과 책임성)

⇒ 중앙-지방정부의 수평관계 재설정, 기능별 초광역화, 차등적 분권방식 논의 활성화, 주민 중심 소규모 지역기반 자치 확대

⑥ (디지털혁신 생태계)

⇒ 온라인 플랫폼 형식의 시민사회 공간 창출, 지역 단위 다양한 사안의 지방의회 의제화,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조성

⑦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 미래교육의 세부사업 설정 및 명확한 재원산출 근거 도출, 중장기적 관점의 교육재정 구조개편 논의 활성화

⑧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 자원환경 및 사회 · 경제적 측면 균형, 지역 녹색경제 생태계 강화

## □ 결론 / 시사점

**※ 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의사결정역량과 문제해결역량 제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지방행정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1 지방정부로의 온전한 권한 및 기능 이양 및 중앙의 각종 자원 지원 요구**

**2 신기술의 행정 적용 촉진 노력 및 기술 혁신 위한 지자체의 역할 수행**

**3 인재양성을 위한 민간자원 적극 활용, 다양한 미래 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수립에 반영 노력

5 지역주민들의 참여 및 사회적 연대 강화, 공동창조 활성화 지원 강화

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 정책·기술개발 활성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호정책 수립

7 국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 협력 위한 지역 내 노력 활성화, 국제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위한 지자체 권한 및 자원 제공

# 4.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없는 일자리가 되었나' (국회미래연구원)

## << 연구요약 >>

◇ 당사자들이 말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현실

## □ 연구배경

○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조합이 일자리 사업에 책임 있게 참여하고 그 연장선에서 노사와 민정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미래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획했던 '지역사회 발전모델'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결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광주시가 21%, 현대차가 19%를 출자해서 완성차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신설해 실현하고자 했던 '공공 주도의 산업 정책'

○ ① 적정 임금, ② 적정 노동시간, ③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 ④ 소통·투명 경영을 구현하고, 이를 '상생일자리재단'과 '상생위원회'를 제도화해 뒷받침하기로 했던 '노사 상생형 일자리 정책'

## □ 주요내용

○ 기업은 적정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동종 업종의 통상 임금과의 격차는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교통·교육·의료·문화 등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보장 정책부터가 실패

○ 동종 업계의 절반도 안 되는 저임금, 작업 투입률 90%를 상회하는 노동 강도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만과 이직률이 높고 향후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 산단 내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동 복지 프로그램은 1200억 원 가까이 지출하고도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현실

##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노사민정협의회는 사회적 대화도, 협의 및 심의 기관도 아닌 하나의 형식으로 기능함. 상생일자리재단은 해산 후 다른 기관에 통폐합되었음. 상생위원회는 특별할 것이 없는 노사협의회로 이어짐. 상생도 동반도 실체가 없는 무권리 일자리에 가까운 '광주형'이 됨

**<< 시사점 >>**

**1 종사자들 대부분이 자동차 분야 최악의 일자리로 알려진 '동희오토'보다 못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 사업이 되기 어려운 상황**

**2 2023년 12월 현대차 출신이 기업 대표로 선임되고 2024년 1월 상급단체 없는 기업 노조가 출범함으로써, 현대차 주도의 새로운 형태의 상생형 일자리로 발전할지 아니면 대기업 노사 관계의 전형적 특징인 대립적 노사 관계 사업장으로 퇴행할지의 시험대에 들어섬**

**3 기존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애초의 취지와 목표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 노사민정의 새 합의가 모색되길 희망함**

# 5.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국회입법조사처)

## ≪ 연구요약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나열식의 정책과 취약한 컨트롤타워 역할로 비판받으며, 인구 전담 부처의 설치 논의가 부상하고 있음.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담 부처 신설의 당위성을 우선 검토하고,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을 바탕으로 전담 부처만의 역할을 설정해야 함. 또한, 인구정책과 관련된 법률·제도를 정비하여 인구 전담 부처가 정책적 책임성과 안정성을 갖도록 해야 함

## □ 인구 전담 부처의 설치 논의 부상

○ 정부는 인구 문제의 컨트롤타워로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음

○ 여당은 '인구부',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등 인구 전담 부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방점을 둔 '인구지역균형발전부'의 신설을 제안하였음

## □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 현황

### 1 현황: 자문위원회 중심의 범부처 협력 체계

○ 2000년대 초반 저출산 현상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출범하였음

○ 2023년에 0.72명을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기존 체계가 인구문제 대응에 적절한지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보다 강화된 정책 간 연계와 부처 간 협력을 추진하고자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위 산하로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시켰음

[그림 1] 인구정책기획단의 조직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업 분석: (1)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결산분석시리즈Ⅵ), 국회예산정책처, 2023, p.108.

## 2 평가 :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취약한 역할

○ 설립 의도와는 달리 저출산고령사회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모습을 드러냄

○ 신설된 인구정책기획단 또한 범부처 협의체를 표방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라는 동일한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

## □ 해외 주요국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 사례

### 1 일본

○ 세계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

○ 2022년 「아동기본법」과 「아동가정청설치법」을 제정하고, 2023년 '아동가정청(こども家庭廳)'이라는 새로운 부처를 설립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담당 부처를 분리함

○ 독립적인 전담 부처인 아동가정청으로 저출산 정책을 일원화하고, 다른 부처의 아동 관련 정책에 권고권을 부여하여 통합적인 시각에서 저출산 정책을 실시하도록 도모

### 2 프랑스

○ EU 내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는 프랑스는 1995년 1.71명을 기점으로 2010년 2.0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감소 추세에도 2020년에 1.83명을 기록하였음

○ 중앙부처인 노동보건연대부(Ministère du Travail, dela Santé, et des Solidarités)를 중심으로 장단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실행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대표로 구성된 총리 산하의 가족아동고령화고등위원회가 다양한 인구정책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함

○ 가족수당기금공단(CNAF)은 전국 100여 개의 지역사무소를 통해 각종 수당 지급, 보육 관련 서비스 등을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함

### 3 스웨덴

○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은 저출산현상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로도 여겨짐. 합계출산율은 1999년 1.5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지만, 이후 반등하여 2010년 1.98명까지 회복함

○ 스웨덴은 보건사회부(Socialdepartementet)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포함한 복지정책을 실시함

### 4 소결: 정책의 책임성 확보와 현장 중심의 연계

○ 일본은 저출산 전담 부처를 설립하여 인구 문제대응의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음. 프랑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포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지만,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집행 기관을 두어 인구 문제에 대응함. 한편, 스웨덴은 책임 기관이 전문 정책 영역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맞춤형 인구정책을 집행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들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와 부처는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연계를 추구할 수 있는 각자의 방식을 갖추고 있음

## □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고려사항

### 1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의 당위성 검토

○ 기존의 인구정책들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직설계안 없이 전담 부처 설치를 논의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추진 체계의 한계가 무엇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이후, 다양한 제안 중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이 과연 당위성을 갖는지 판단해야 할 것임

### 2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을 통한 전담 부처의 역할 설정

○ 인구 전담 부처의 설치 과정에서 떠오를 주요한 쟁점 중 하나는 인구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통령 공약으로 폐지가 계획되어 있는 여성가족부, 지역균형·발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신설 논의가 있는 이민청 등 개별 정책 부처들과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임

○ 인구 전담 부처의 역할을 고려해 관련 부처 간 서로 중첩되는 업무 영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3 관련 법률·제도의 정비를 통한 명확한 근거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협업의 책무성을 확보할 규정이 없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각 과제 단위로 세부 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부처 간 역할과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음

○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전담 부처의 업무 범위, 권한,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6. 주민소송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건·비용·절차 개선방안(국회입법조사처)

## ≪ 연구요약 ≫

◇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의 재정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2006년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전국에서 45건의 주민소송이 제기되었음. 이 중에서 5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40건은 종결됐는데, 종결된 사건 중 1건 만이 일부 인용되었음. 향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개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며, 주민소송의 후속절차를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함

## □ 논의 배경

○ 2024년 2월 14일 세금 낭비 논란을 빚어온 용인경전철 관련 주민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전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

○ 주민소송제도는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 □ 주민소송제도의 의의 및 주요 내용

○ 구체적으로 주민소송은 ①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②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③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④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이 제기할 수 있음

○ 주민소송은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주민감사청구의 경우 18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자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주민연서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함(동법 제21조제1항). 여기서 주민연서는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시·군·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필요로 함

## □ 주민소송의 운영 현황 및 주요 사건

### 1 운영 현황

○ 주민소송제도가 시작된 2006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제기된 주민소송 사건은 45건이며, 이 중에서 5건의 사건은 2024년 4월 17일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고, 40건은 종결되었음

[표] 주민소송 사건의 처리기간(종결된 40건)

| 구분 | 일 기준 | 월 기준 | 연 기준 |
|---|---|---|---|
| 평균 | 1,046 | 34 | 3 |
| 최소 | 117 | 3 | 0.3 |
| 최대 | 2,605 | 85 | 7.1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소송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4.2)와 행정안전부, 「2023 주민소송 현황」(최종 검색일: 2024.4.17.) (https://www.mois.go.kr)을 참조해 저자 작성.

○ 그동안 주민소송이 제기되어 종결된 사건은 40건임. 그 결과를 보면, 주민이 일부승소한 사건은 1건이고, 34건은 기각되었고, 각하 3건, 소취하 2건이었음. 일부승소한 사건은 주민들이 2012년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무효확인 등에 관한 소송"임

### 2 주요 사건

○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민 승소로 확정된 사건은 1건임. 2019년 대법원에서 서울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주민소송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

* 대법원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되고, 유사한 형태의 점용허가가 이어지면 도로의 지하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였음

○ 최근 법원에서 일부승소를 받은 용인경전철 사건인데, 2024년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파기환송심)*이 있은 후 상고가 제기되어 현재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음

* 2024년 2월 14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前 용인시장은 과도한 수요 예측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연구원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과도한 수요 예측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음

## □ 향후 개선방안

### 1 주민소송 제기 요건 완화

○ 주민소송 제기 요건의 완화를 위해, 소송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주민감사청구시 주민연서의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간 형평성을 위해 인구수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 주민감사청구의 주민연서 기준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주민연서의 기준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 시·도 500명 →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 200명, 시·군·구는 200명 → 150명으로 변경

○ 주민감사청구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현재 주민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나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사청구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2 소송비용 부담 완화

○ 주민소송의 소송비용은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패소자가 부담함. 그런데 이 같은 패소비용에 대한 부담은 주민소송 제기를

주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주민소송의 활용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민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주민소송 패소비용의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익소송의 비용을 국가·지자체 등이 부담·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조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 제안된 양정숙의원 대표발의('20.7.9.)「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20.9.22.)「집단소송법안」등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강진군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등

### 3 주민소송 후속절차 개편

○ 장기적으로 주민소송 후속절차의 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 주민소송 제도 하에서는 4호의 주민소송이 인용되는 경우, 지자체가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유사한 소송이 되풀이될 수 있음

○ 소 제기자가 주민소송 단계에서 직접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부감사 등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원인자에 대한 청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혹은 지자체가 변상명령 등 행정행위를 통해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함

# 7.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국회입법조사처)

## ≪ 연구요약 ≫

◇ 유럽·미국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례와 한국형 K-패스 비교 분석 및 K-패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향후 과제) 제시

## □ 연구배경

○ K-패스 미참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를 유도하여 원활한 정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기이용권의 합리적 선택이 보장되도록 지원 대상별 상정가능한 시나리오를 다수 비교·공시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여, 사후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새롭게 도입될 K-패스 등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업과 유럽·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

##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K-패스'

○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부터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환급해 주는 'K-패스' 사업을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후속 사업으로 시행 예정

○ 이와 관련해 2024년 1월 국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4.1.30. 공포)을 통해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의 기초를 마련

《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간 비교 》

| 구 분 | K-패스 | THE 경기패스 | 인천 I-패스 | 기후동행카드 |
|---|---|---|---|---|
| 지원기준 | 월 15회 이상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 (카드발급 및 회원가입 필요) | | | 카드구매자 |
| 지원방식 | 사후 환급 | | | 사전 결제 |
| 지원대상 | 일반 20% 환급, 청년 30% 환급, 저소득층 53% 환급 (경기·인천은 청년 범위 확대 및 어린이·청소년 지원 추가, 인천은 어르신 환급 혜택 추가 ) | | | 일반 6만 2천원 청년 5만 5천원 (따릉이 포함시 3천원 추가) |
| 지원상한 | 월 최대 60회 | 무제한 | | 무제한 |
| 이용수단 | 전철·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포함) | | | 서울시내 전철·버스, 따릉이,리버버스 |
| 이용지역 | 전국 (이용자 주소가 등록된 지자체 참여 시) |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이용 | 인천시민이 전국에서 이용 | 서울시 (김포골드라인, 인천·김포 광역버스 포함 논의중) |
| 시행시기 | '24.5월 | '24.5월(협의중) | | '24.1.27~6.30 (시범사업), '24.7~(본사업) |

※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정리

## □ 유럽·미국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례

○ 유럽·미국 등 해외 각 국은 사용 지역·기간·지불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정책을 시행 중

○ **일정기간·전국호환이 가능한 사례** (독일·오스트리아)

- 독일은 '22.6. 월 9유로 (약 1만 3천원)로 독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을 3개월 간 시행, 이후 후속사업으로 '23년부터 '49유로 티켓' 시행
- **49유로** (약 7만 1천원) **티켓**은 **선불제**로 **운영**되고, 월 49유로로 **시내 및 광역 교통을 위한 모든 지하철, 트램, 시내버스** 등 **독일 전역의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 가능** (ICE 등 고속열차나 장거리 철도 등의 이용은 제한)

- '21년 오스트리아는 '**기후티켓**(KlimaTicket)'을 도입, 기후티켓은 기후 친화적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1,095유로**(약 159만원, 월 91유로 수준)로 **1년 동안 버스, 트램, 기차 등 오스트리아 내의 거의 모든 대중교통**(일부 관광상품 제외)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할인 정액권**

○ 일정 기간 **특정 지역 내 일정액 지불 시 무제한 사용 가능 사례**(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 프랑스 파리의 **나비고**(Navigo) **월간 패스**는 일드 프랑스 지역 내 구역(1~5존)의 지하철, RER(광역급행철도), 버스, 트램, 기차 등 **대중교통망**을 **전 구간** 기준 **월 86.4유로**(약 12만 5천원)로 **이용 가능**
- 영국 런던의 **트레블카드**(Travelcard) **월간권**으로는 이용구간(1~6존) 내 지하철, 버스, 트램 등을 전 구간 기준 **월 285.7파운드**(약 48만5천원)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

○ 그 밖에, 요금상한제 방식으로 미국뉴욕의 MTA(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OMNY 방식**이나 영국 런던의 **1일·주간 한도 제도**(Daily·Weekly Cap)가 있음

* OMNY(One Metro New York) : **일정 사용액**까지는 **일반 이용객과 동일한 금액**을 **지불 후 일정 사용액의 상한을 넘어가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 K-패스와 해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간 비교 》**

| 구 분 | K-패스 | 49유로·기후티켓 | Navigo·Travel 카드 월간권 | 교통카드 요금상한제 옵션 |
|---|---|---|---|---|
| 국 가 명 | 한국 | 독일, 오스트리아 |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 미국 뉴욕, 영국 런던 |
| 사용지역 | 전 국 | | 특정지역 내 | |
| 결제방식 | 후불제 | 선불제 | | 후불제 |
| 혜택제공 방식 |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60회 한도 | 사용 전 정액권 구입, 무제한 이용 | | 금액 상한까지 통상금액 지불. 상한 초과시 무료 |
| 사용기간 | 1개월 | 1개월·1년 | 1개월 | 1일·1주 |

○ 유럽·미국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업은 자차 이용에 따른 혼잡 및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대중교통을 주로 활용하는 계층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 강화** 등 사회경제적 편익을 늘리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

## □ 향후 과제

○ K-패스 운용의 정착을 위해 **미참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및 운영 시스템 안정화 유도 필요

○ K-패스 사업 미참여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인구수 10만명 이하로, 모두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진행 중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① 이미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사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② 고령층이 많아 회원가입·교통카드 발급 등 이용자 부담이 크며, ③ 정책 이행에 따른 행정부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미참여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한 전국 호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인 K-패스 사업에서 사실상 **소외된 측면**이 있으므로, 미참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안적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또한, 일반 국민은 자신의 금액별·빈도별 이용 패턴을 고려해 각 정기이용권 별 유·불리를 직접 계산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 초래

○ 따라서, **지원 대상별**로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수 비교·공시**하는 등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과

○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사업 시행이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는 운용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 및 별도로 **일·주·월 단위** 등 **이용기간을 다양화**하여 내·외국인 **모두에게 선택 가능한 옵션**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마련 필요

#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 1.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등

- 국회예산정책처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 가. 현 황

○ 이차보전은 정부가 특정 정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을 통해 저리(정책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어 민간의 시중금리와 정부가 목표하는 정책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재원으로 보전해주는 정책수단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수요자가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받을 경우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동 사업의 2024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6,280억 6,300만원 증액된 1조 3,936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2 결산 | 2023 계획 | | 2024 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A) | 수정 | | B-A | (B-A)/A |
| 이차보전 지원 | 498,184 | 765,578 | 1,009,478 | 1,393,641 | 628,063 | 82.0 |

자료: 국토교통부

### 나. 분석의견

○ 첫째,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직접 융자와 달리 투입되는 재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중장기적인 사업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토교통부는 수요자인 국민이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등에 필요한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통해 저리로 융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사업과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하되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사업의 경우 수요자에게 직접 융자하기 때문에 재원소요가 큰 반면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경우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만 소요되므로,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직접 융자방식과 비교할 때 같은 재원을 투입하면서 더 많은 수요자에게 저리의 융자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지출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접융자 및 이차보전 방식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 최근 5년간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2020년 2,615억원 수준에서 2024년 1조 3,936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이는 2013년부터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대출잔액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상승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최근 5년간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액]

(단위: 백만원)

|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사업비 | 261,519 | 356,503 | 498,184 | 1,009,478 | 1,393,641 |

주: 2020~2022년은 결산 기준, 2023년은 수정계획 기준, 2024년은 계획안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도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계획액 | 산출내역 |
|---|---|---|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20,934 | '24년 예상 평잔(9,182억원) × 이차보전 금리(2.28%) |
| 주택금융공사유동화 취급분 | 233,308 | '24년 예상 평잔(293,072억원) × 이차보전 금리(0.63~0.79%) |
| 디딤돌대출은행취급분 | 174,480 | '24년 예상 평잔(103,242억원) × 이차보전 금리(1.69%) |
| 버팀목대출(중기취업임차보증금) 은행취급분 | 274,195 | '24년 예상 평잔(124,908억원) × 이차보전 금리(1.64~2.46%) |
| 버팀목대출(중기취업제외) 은행취급분 | 393,762 | '24년 예상 평잔(240,099억원) × 이차보전 금리(1.64%) |
| 신생아 특례 은행 취급분 | 296,962 | '24년 예상 평잔(136,758억원) × 이차보전 금리(1.37~2.38%) |
| 합계 | 1,393,641 | - |

자료: 국토교통부

○ 이외에도 정부는 2022년 7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직접 융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출규모를 줄이고 수혜 규모는 유지·확대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정책기조 역시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규모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일례로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의 5년간 지출계획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데, 2022년 수립한 2022~2026 중기재정계획의 경우 전년 수립한 중기재정계획보다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 가장 최근 수립한 2023~2027 중기재정계획의 경우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어 2024년도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규모를 전년 수립한 계획 대비 약 8,000억원 확대된 1조 3,936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2025~2026년 사업규모 역시 지난 계획 대비 약 3,000억원씩 확대할 예정이다.

[이차보전 지원사업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원)

| 중기재정계획 | 수립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 2021~2025 | 2021 | 3,386 | 3,472 | 3,272 | 3,080 | 2,963 | - | - |
| 2022~2026 | 2022 | - | 3,850 | 7,656 | 5,897 | 6,254 | 6,557 | - |
| 2023~2027 | 2023 | - | - | 7,656 | 13,936 | 9,850 | 10,927 | 12,455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에 따라 이차보전 대출잔액 역시 2020년 45.4조원에서 2024년 111.3조원까지 증가할 예정으로, 이는 향후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가 1%p 증가할 때마다 1.1조원이 추가적으로 이차보전을 위해 투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20~2024년 이차보전 대출잔액]

(단위: 조원)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대출잔액 | 45.4 | 46.5 | 53.6 | 78.1 | 111.3 |

주: 2020~2022년은 실적치, 2023년 및 2024년은 전망치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직접 융자하는 경우 융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부담은 존재하지만 회수되는 융자원금과 이자를 다시 융자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반면, 이차보전으로 투입되는 재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결국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전체 사업비 중 회수가 불가능한 사업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의 전체 사업비 대비 이차보전 지원사업 규모는 2020년 0.98%에서 2024년 3.74%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 전체 사업비 대비 이차보전 지원사업 비중]

(단위: 억원, %)

|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사업비(A) | 265,616 | 316,662 | 292,682 | 352,464 | 372,813 |
| 이차보전 지원(B) | 2,615 | 3,565 | 4,982 | 10,095 | 13,936 |
| 사업비 대비 이차보전 지원 비중(B/A) | 0.98 | 1.13 | 1.70 | 2.86 | 3.74 |

주: 2020~2022년은 결산 기준, 2023년은 수정계획 기준, 2024년은 계획안 기준임
자료: 국토교통부

○ 또한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가 확대되거나 시중금리가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역시 당초 계획보다 커질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당초 계획 대비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경우 2023년 동 사업의 당초계획액을 7,655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융자수요 증가, 기준금리의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의 상승 등으로 인해 1조 94억원 수준으로 계획액을 변경한 바 있다.

○ 또한 2023년 9월 FOMC 결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내에 추가적으로 인상되거나 2024~2025년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 시중금리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차보전 투입재원이 당초 예상보다 추가로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이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2. 주택도시기금의 공자기금 예탁 및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 분석'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정여건상 일반회계 재원의 투입에도 한계가 있다.

○ 이외에도 2024년 국토교통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보전받아야 하는 지출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출자, 이차보전 지원 등을 포함하여 약 6.1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일반회계 전입금은 3.3조원으로,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의 보전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 결과적으로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경우 투입되는 재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나 그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확대가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적정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를 보전함에 있어 기존 대출의 시중금리를 최근 반기의 시중금리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금리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산정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와 계좌별 대출금리의 금리 차이를 반기별로 산출하여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시중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매월 고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신규)금리를 반기별로 산술평균하고, 계좌별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재원으로 대출 시 적용하는 금리(정책금리)를 의미한다. 또한 기존 취급분(기존 대출)의 시중금리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최근 반기의 시중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차보전료 산출방식]

| 구분 | 주요내용 |
|---|---|
| 이차보전료 산출식 | [계좌별 평균잔액 × 계좌별 금리차] × 해당 반기 중 대출일수 / 해당연도 일수<br>※ 계좌별 금리차는 시중금리와 계좌별 대출금리의 차이를 의미 |
| 기존 취급분 관련 | 기존 취급분의 시중금리는 최근 반기의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지급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러한 방식은 대출 당시의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가 아닌 최근의 시중금리와 정책금리를 기준으로 이차보전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실제 금리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예를 들어 금리 상승 이전 혹은 상승 도중 이루어진 대출의 경우 최근 반기의 시중금리가 실제 대출 당시의 시중금리보다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중은행으로의 이차보전료가 과다계상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 인하 이전 혹은 인하 도중 이루어진 대출의 경우 최근 반기의 시중금리가 실제 대출 당시의 금리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시중은행으로의 이차보전료가 과소계상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 2022년부터 본격화된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상승 추세였음을 감안할 때 기존 취급분의 대출금리를 최근 반기의 시중금리로 보고 이차보전료를 산출하는 방식은 시중은행에 대한 이차보전료 과다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차보전료 과소지급으로 이어져 시중은행에 대한 적정 보수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기존대출분에 대한 이차보전료 산출 시 실제 금리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실제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등 관련기관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수행 기간 등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 가. 현 황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반려동물과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 수용태세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이다

○ 2024년도 계획안에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세부내역사업은 전년 대비 5억원 증액된 1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4년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2 결산 | 2023 당초 | 2023 수정(A) | 2024 계획안(B) | 증감 B-A | 증감 (B-A)/A |
|---|---|---|---|---|---|---|
|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 16,838 | 15,700 | 15,700 | 14,025 | △1,675 | △10.7 |
|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 500 | 1,000 | 1,000 | 1,500 | 500 | 50.0 |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 - | 500 | 500 | 1,000 | 500 |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에 개소당 2억 5,000만원씩 2개소를 지원하는 예산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2024년에는 2개소가 증가한 4개소 지원 예산 10억원이 편성되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목적 |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방문 유입 및 관광 활성화 |
| 사업기간 | · 단년도 계속(2023년부터 시작) |
| 사업수행 | · 자치단체경상보조<br>* 2023년은 민간경상보조(문체부 → 한국관광공사 → 지자체) |
| 지원대상 선정 | · 선정 방식: 공모<br>-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 → 서면평가 → 발표 및 현장평가<br>· 선정 기준<br>- 서면평가(40%): 계획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적절성, 기대효과<br>- 발표·현장평가(60%): 사업 추진 여건의 우수성, 계획과 현장의 부합성, 사업의 실현가능성<br>- 가점(최대 3%):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
| 2023년 계획 | · 5억원(2억 5,000만원×2개 지자체) |
| 2024년 계획안 | · 10억원(2억 5,000만원×4개 지자체)<br>*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개소씩 신규로 지원하고, 지원받은 개소를 평가하여 최대 4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연차별 계획]

(단위: 억원, 개소)

| 구 분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계획액 | | 5 | 10 | 15 | 20 | 20 | 15 | 10 | 5 |
| 지자체 수 | 신규 | 2 | 2 | 2 | 2 | 2 | - | - | - |
| | 기존 | - | 2 | 4 | 6 | 6 | 6 | 4 | 2 |
| | 합계 | 2 | 4 | 6 | 8 | 8 | 6 | 4 | 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 2024년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계획안에는 신규 및 계속 지원 모두 개소당 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지자체가 선정되는 1차 연도에는 공모 및 지방비 확보 등의 기간 소요로 사업 수행 기간이

짧고 이에 따른 평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1차 연도에는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2차 연도부터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2023년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2023년 사업의 실적을 8월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에 사업비를 전액 교부하고,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사업 수행 지자체인 울산과 태안에 사업비를 전액 재교부하였으나, 각 지자체는 9월 추경으로 지방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실집행액이 없다.

[2023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부처 | | | 공사 | | 지자체 | |
|---|---|---|---|---|---|---|---|
| | 계획액 | 교부액 | 교부일 | 재교부액 (A) | 재교부일 | 실집행액 (B) | 실집행률 (B/A) |
| 울산 | 250 | 250 | '23.2.16.<br>'23.7.20. | 250 | '23.8.8. | 0 | 0.0 |
| 태안 | 250 | 250 | '23.2.16.<br>'23.7.20. | 250 | '23.8.8. | 0 | 0.0 |
| **합계** | **500** | **500** | | **500** | | **0** | **0.0** |

주: 2023년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같은 예산 확보 지연에 따라 동 사업은 당초 1월부터 공모를 준비하여 4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6월부터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각 지자체는 8월부터 한국관광공사와 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 당초 계획 대비 추진 경과 비교]

| 구분 | 당초 계획 | 추진 경과 |
|---|---|---|
| 공모계획 수립 및 공모 | 2023.1.~3. | 2023.1.~3. |
| 지자체 사업 컨설팅 | 2023.4.~5. | 2023.4.~7. |
| 지자체 사업 추진 | 2023.6.~12. | 2023.8.~1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3년에 선정된 지자체인 울산과 태안이 공모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 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와 인프라를 갖춘 친화관광도시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모시 지자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4개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최대 4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그러나 지자체가 선정되는 해에는 단기간의 사업 수행으로 동 사업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하는 연차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계획(예시)에는 1차 연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2차 연도 고도화 및 3차 연도 활성화를 거쳐 4차 연도에 완성하는 단계별 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의 4개년 연차별 추진계획은 대부분 단년도 사업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의 체계적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지자체가 선정되는 1차 연도에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2차 연도부터 본사업 추진 예산을 편성하여 성과를 평가한 후 차년도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연차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계획(예시)]

| 1차 연도 | 2차 연도 | 3차 연도 | 4차 연도 |
|---|---|---|---|
| · 친화관광도시 4개년 개발 계획 수립<br>· 친화관광 콘텐츠 발굴<br>· 민·관 협력체계 구축<br>· 지역산업 연계방안 마련 | · 친화도시 브랜딩 및 관광코스 개발<br>· 민관 협력체계 고도화<br>· 연관 일자리 발굴<br>· 지역상권 지원 시행 | · 반려동물 동반관광 일자리·교육 확대<br>· 관광자원·여건 연계<br>· 지역 관광상권 활성화<br>· 민간 참여 확대 | · 자원·여건·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완성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3. 국립대학 시설확충의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원 예산 적정 수준 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 2023.10.) -

### 가. 현 황

○ 국립대학 시설확충은 37개 국립대학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8,300만원이 증액된 1조 2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2 결산 | 2023 예산(A) | 2024 예산안(B) | 증감 | |
|---|---|---|---|---|---|
| | | | | B-A | (B-A)/A |
| 국립대학 시설확충 | 517,918 | 1,001,853 | 1,002,836 | 983 | 0.1 |
| 반도체 공동연구소 | - | 2,716 | 28,328 | 25,612 | 943.0 |

자료: 교육부

○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권역 내 대학 및 교육기관들이 반도체 교육, 실습 인프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교육부는 반도체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권역별 공모를 통해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지정·지원한다.

○ 규모(사업기간 '23~'26년)로 도입하여 2023년 예산에는 설계비 2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에는 공사비를 편성하였다. 또한 2024년에는 신규로 2개 권역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도 반도체 공동연구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학교명 | 사업명 | 사업기간 | 총사업비 (국고) | 예산현황 | | |
|---|---|---|---|---|---|---|
| | | | | '23 | '24(안) | 향후 |
| 전남대 | 1권역 반도체공동연구소 | '23~'26 | 16,417 | 679 | 6,740 | 8,998 |
| 부산대 | 2권역 반도체공동연구소 | '23~'26 | 16,417 | 679 | 6,740 | 8,998 |
| 경북대 | 3권역 반도체공동연구소 | '23~'26 | 16,417 | 679 | 6,740 | 8,998 |
| 충남대 | 4권역 반도체공동연구소 | '23~'26 | 16,417 | 679 | 6,750 | 8,988 |
| 교육부 | 반도체공동연구소 (2개소) | '24~'27 | 32,834 | - | 1,358 | 31,476 |
| 합계 | | | 98,502 | 2,716 | 28,328 | 67,458 |

자료: 교육부

## 나. 분석의견

○ 첫째, 2023년 신규 도입한 반도체 공동연구소 신설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4년 예산안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23년 전남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가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는 설계 전 이행사항(행정적 절차)을 시행 중이며 10월에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대는 제6공학관 개축사업 연계(2개 사업 병합)를 위한 감사원 컨설팅 시행 중이며, 감사원 컨설팅 완료 후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설계 공모, 업체 선정, 설계 진행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의 경우 계획대로 2023년 10월에 설계 공모가 실시될 경우에도 2024년 7월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의 경우에는 감사원 컨설팅이 진행 중이며 컨설팅이 완료되고 2023년 10월에 설계 공모 없이 2024년 5월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반도체공동연구소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23. 8. 30. 기준)

| 학교명 | 사업기간 | 총사업비 (국고) | 예산현황 | | | 현 추진 내용 | 향후 계획 |
|---|---|---|---|---|---|---|---|
| | | | '23 | '24 | 향후 | | |
| 전남대 | '23~'26 | 16,417 | 679 | 6,740 | 8,998 | 설계 전 이행사항 (행정적 절차) 시행 | 10월 설계 공모 |
| 부산대 | '23~'26 | 16,417 | 679 | 6,740 | 8,998 | 제6공학관 개축사업 연계(2개 사업 병합)를 위한 감사원 컨설팅 시행 중<br>※ 현재 추진 중인 제6공학관 건물 지하로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계획함에 따라 2개 사업 병합 검토 | 감사원 컨설팅 완료 후 추진 |
| 경북대 | '23~'26 | 16,417 | 679 | 6,740 | 8,998 | 설계 전 이행사항 (행정적 절차) 시행 | 10월 설계 공모 |
| 충남대 | '23~'26 | 16,417 | 679 | 6,750 | 8,988 | 설계 전 이행사항 (행정적 절차) 시행 | 10월 설계 공모 |

주: 설계 전 이행 사항(행정적 절차)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료: 교육부

○ 따라서 2023년 신규 도입한 반도체 공동연구소 신설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4년 예산안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둘째, 2023년 당초 비수도권 4개 권역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신설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므로, 2024년 2개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소재 국립대학 수, 교육수요 등의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 2023년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을 신규 도입할 당시 교육부는 수도권에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운영 중이므로, 이를 모델로 비수도권 지역에는 4개 권역별로 국립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지정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4개 권역은 전남대(Ⅰ권역)·부산대(Ⅱ권역)·경북대(Ⅲ권역)·충남대(Ⅳ권역)이며, 각 권역에 소재하는 4년제 국립대학 수는 5개이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이들 국립대학들 중심으로 공동으로 활용한다.

[국립대학 반도체 공동연구소 대상지역별 권역]

| 권역 | 대상지역 | 소재 국립대학 |
|---|---|---|
| Ⅰ권역 |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 전남대, 전북대, 목포대, 순천대, 군산대 |
| Ⅱ권역 | 제주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경대, 제주대, 창원대 |
| Ⅲ권역 | 경상북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 경북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안동대, 금오공대 |
| Ⅳ권역 |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공주대, 한국교통대 |

자료: 교육부

○ 또한 2023년 공모 결과, Ⅰ권역에서는 전남대, Ⅱ권역에서는 부산대, Ⅲ권역에서는 경북대, Ⅳ권역에서는 충남대가 선정되었다.

○ 교육부는 2024년에는 당초 4개 권역에 4개 국립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정하여, 신규로 2개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추가 신설하기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선정대학과 연계한

권역 내 국립대학의 협조체계가 필수적이고 선정대학의 지리적 여건 상 권역 내 모든 교육수요를 포괄하기 힘들기 때문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당초 권역별로 5개 국립대학을 포괄하는 것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므로, 2024년 2개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소재 국립대학 수, 교육수요 등의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 Ⅴ. 기타 참고자료

# Ⅴ. 기타 참고자료

## 1. [도서] 처음 만나는 정신과 의사 (백종우 지음)

◆ 추천의 글

# 통계청 <국민 삶의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자살 사망자는 총 12,906명**으로 대한민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에 달한다. 한 해에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3.6배로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5위**이다.

# 북유럽을 대표하는 선진국 중 하나인 **덴마크는 국민 7명 가운데 1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덴마크가 삶의 조건이 열악한 나라여서가 아니다. **덴마크는 국민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 질병관리청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보면, **전북의 경우 우울감 경험률이 전국에서 가장 미흡(9.4%), 전주시의 경우 전국 시군구 중 2위(13.2%)**로 조사되어 지역별 취약한 건강지표에 대한 해소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 올해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함께 나서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

◆ **우리 모두에게는 내 마음을 살펴주는 정신건강 주치의가 필요하다**

《처음 만나는 정신과 의사》**는** 25년 이상 환자들과 소통하며 얻은 깨달음과 공감, 삶의 경험을 녹여낸 책으로 백종우 교수의 첫 단독 저서이다. 처음 정신과 의사를 찾고 싶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의 길잡이가 되어줄 책으로, 첫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싶지만, 문 앞에서 주저하는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책,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높을 수 있는 진료실의 문턱을 스스로 낮춰주는 배려심이 묻어나는 책이기도 하다.

◆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현대인에게 우울증은 감기처럼 찾아올 수 있는 흔한 증상이다. 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마음 기댈 곳이나 마음 나눌 사람 하나 없다면 더 힘들 수 있다. 가정과 직장 내 인간관계, 우울증, 트라우마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정신과 문을 선뜻 두드리기 어렵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 괴롭다.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위 눈치를 보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을 넘도록 해보자.

## Ⅴ. 기타 참고자료

### ◆ '우울감'은 때로는 우리 삶의 도움을 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우울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사실 인간은 우울, 불안, 분노 이런 감정들을 기본적으로 싫어한다. 그 감정을 별로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사실 이미 우리는 우울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 인생에서 뭔가 기대 이하일 때, 생존을 위협받을 때,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역기능도 있지만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불안 때문에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살았듯이, 분노는 어떤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좋은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물론 우울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 우울이라는 신호는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제공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

### ◆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故 임세원 교수

故 임세원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교수로 나의 동기이자 절친이었다. 한국형 표준 생명지킴이 교육을 같이 만들고 자살 예방을 위한 일들을 같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2018년 마지막 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의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그 당시에 환자들이 비난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인의 유족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는 사회가 고인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다. 고인이 가장 사랑했던 환자들이 이 일로 비난받는 것을 유가족도 원치 않았던 것이다. 많은 국민이 마음을 함께 해주셨고 실제 국회에서도 '임세원 법'*이 통과되었다. 또한 마지막 순간에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환자와 동료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서, 의사자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그의 바람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는 사회로 한 걸음 내딛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임세원법 :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하고,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을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미함('19.04.05. 법안통과)

◆ 환자는 가장 좋은 스승이다

어떤 분들은 증상이 너무 심각하고 주위를 둘러싼 환경이 힘들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혹시 더 잘 치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환자분이 느끼는 절망감만큼 내 마음속에 절망감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무력감, 그리고 이제 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는,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어려운 상태의 환자분들도 있다. 그러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환자분이 극복하고 상태가 좋아지면 '함께했다' 는 보람이 크다. '우리(의사)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구나'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거꾸로 환자분들이 가르쳐 주곤 한다. 때로 앞이 안 보이는 터널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분명히 희망이 보이는 시기가 올 수 있고, 그렇기에 이들과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경험을 하루하루 하게 된다. 가장 좋은 스승은 언제나 환자들이다.

◆ 정신과 의사도 우울증을 앓는다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아무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려고 해도 자신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환자를 잃거나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트라우마도 소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러한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받을 필요가 있다. 나 또한 친구를 잃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동료상담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한 故 임세원 교수, 그 역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다.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었는데, 우울증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 '이태원 참사'로 보는 한국 사회의 애도 문화,,,

한국 사회는 아직 트라우마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 마음을 다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그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가족의 아픔을 애도하는 과정,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재난과 트라우마를 접하면 사람들은 이 광경이 유발하는 마음의 불안과 우울, 분노가 싫다. 그 감정이 때로 가장 위로받아야 할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비난으로 바뀌어 버리기도 한다.

그러면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정신적 타격을 받고 괴로워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의사로서 치료하면 뭘 하나 싶을 때도 있다. 회복을 위한 오랜 노력이 하루만에 댓글로 무너지는 것을 보기도 한다. 사람을 말로써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새겨야 한다.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트라우마 감수성 교육'**이 한국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처럼 의무화되고 있다. 해외처럼 피해자와 유가족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애도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하고, 사회가 애도를 통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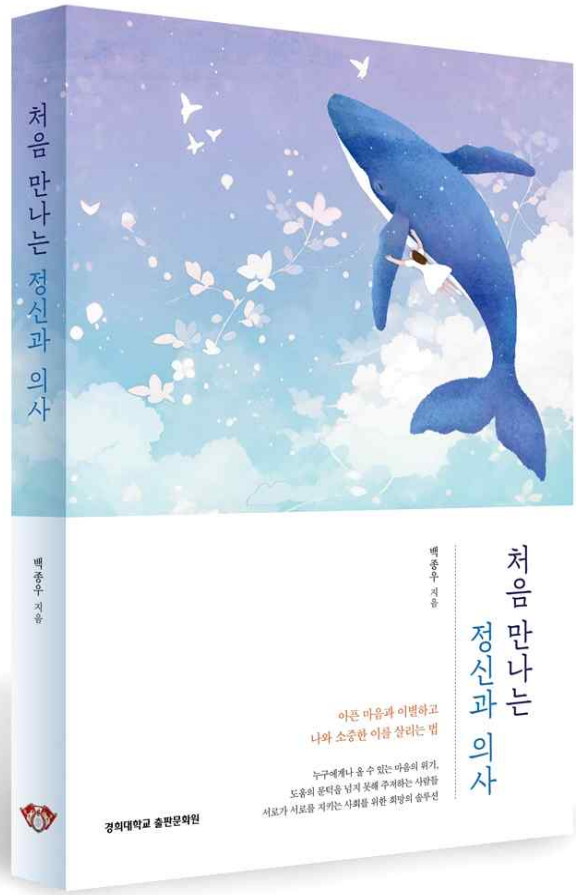
**◆ 정신질환자들이 편견에 시달리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예전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책임졌는데 핵가족화, 1인가구 시대가 되면서 아픈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다. 조현병이나 중증 정신질환자 대부분은 선량한 분들이고 특정 시기에 망상이나 환청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될 때는 치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했던 '묻지 마 범죄' 등 조현병이나 중증 정신질환 관련 사고는 방치되어 혼자 살거나, 아니면 부모 중 한 분만 모시고 있는 집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그러므로 문제 자체는 조현병 자체가 아니라 이걸 둘러싼 시스템이다. 이들은 아픈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열악한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시스템이 있어야, 이웃 중에 중증 정신질환자가 있어도 안심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분들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뿐 아니라, 나머지 경제적 부담을 전부 가족이 져왔다. 해외에서 정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만들어 간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런 변화가 앞당겨질수록 조현병이나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백종우 저자의 인터뷰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잔인하고 지옥 같아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온라인에서 만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건,*
*진료실의 정신과 의사이건 말이죠."*




지은이 **백종우**

- 사회정신의학자
-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전문의
- 국회자살예방포럼 자문위원장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
- (전)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회장
- (전) 중앙자살예방센터장

## 첨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24.07.시행)

| | | | | |
|---|---|---|---|---|
| ① 사업명 (유형) | | ※ 사업유형 : 보건의료분야 | | |
| ② 중기재정지출 | | 총사업비 7,892억원'<br>• 국비+지방비+자부담 | ③ 사업기간 | 24년 ~<br>계속사업 |
| ④ 추 진 주체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 | |
| | 지자체·기관 | 전국 17개 시도 | | |
| ⑤ 사업목적 | | ○ OECD 자살률 1위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만성화·중증화 방지** | | |
| ⑥ 성과지표 | | ○성과지표명: 상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br>○측정 산식: 상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br>○측정 방법: 마지막 상담 회차에서 이용자 대사 만족도 조사 실시 | | |
| ⑦ 추진경위 | |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1조, 제12조<br>- **(대통령 지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말씀('23.8.1)을 통해 정신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반영 의지 표명<br>○ 사전절차 추진내용 :<br>-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혁신방안 관련 사업" 예산안 마련 | | |
| ⑧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 | ○ 시범사업·본사업 관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내용 : 해당없음 | | |
| ⑨ 사업규모 |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br>- 서비스 대상 : 정신질환 고위험군·중위험군 및 일반국민<br>- 서비스 내용 : ①정신질환 위험군 대상별 정신건강 상담 지원, ②마음건강 전달체계 구축 등<br>- 서비스 대상자 규모<br>▲('24년) 8만명(중·고위험군 8만명) → ▲('25년) 16만명(고위험군 4만명, 중위험군 12만명) → ▲('26년) 26만명(고위험군 4만명, 중위험군 12만명, 일반국민 10만명) → ▲('27, '28년) 各 50만명(고위험군 8만명, 중위험군 18만명, 일반국민 26만명) | | |

※ 전북 사업규모 : 14개 시·군, 총 2,346명 (총사업비 1,333,005천원)

## 2. [통계]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4.05.]

◆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가 전국 단위로 첫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발표됨**(보건복지부). 그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되었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적 마련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음. 향후 청소년의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 교육청 등과 협력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운영이 필요하겠음.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6세 이상 ~ 17세 이하, 6,275명(확률비례계통추출)
◈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 및 자기기입식 조사방식
- 응답자: 6~11세 소아(부모보고), 12~17세 청소년(부모· 본인보고)
◈ 조사기간: 2022년 9월 ~ 2023년 2월
◈ 연구기관: 서울대학교(정신건강의학과 김붕년 교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

-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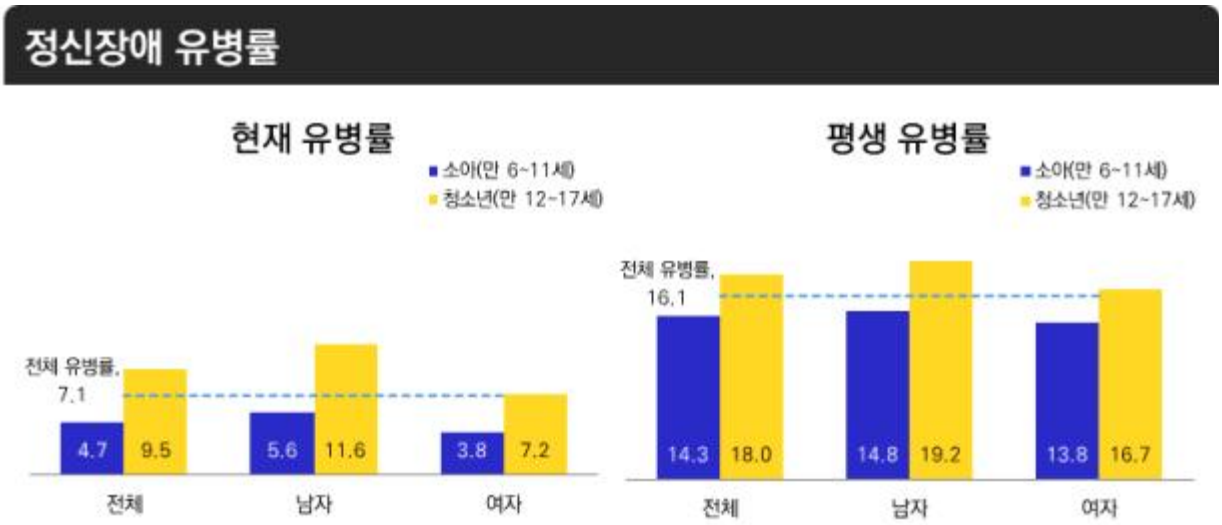
# 〈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주요결과 〉

## 1. 정신장애 유병률

**현재 유병률**은 조사를 실시한 시점(2022.09~2023.02)에 증상 지속기간을 포함하여 장애 진단에 필요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 경우를 의미함.
**평생 유병률**은 현재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함.

○ 국내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현재 유병률**은 전체 **7.1%**로, 소아 4.7%(남 5.6%, 여 3.8%), 청소년 9.5%(남 11.6%, 여 7.2%)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약 2배 높았으며, **남학생**의 유병률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 **평생 유병률**은 전체 **16.1%**이며, 소아 14.3%(남 14.8%, 여 13.8%), 청소년 18.0%(남 19.2%, 여 16.7%)로 조사되었다.




## 2. 정신장애 유형별 조사결과

○ **현재 유병률**은 **적대적 반항장애(2.7%), 틱장애(2.4%)**, 섭식장애(1.1%) 순으로 나타났다.

- **소아는 틱장애(2.3%)**, 적대적 반항장애(1.7%)가 높았고,
- **청소년은 적대적 반항장애(3.7%)**, 틱장애(2.4%), 약물사용장애(1.7%)가 높았다.

○ **평생 유병률**은 **특정공포증(5.8%), 적대적 반항장애(4.1%)**, 분리불안장애(3.8%), 틱장애(2.4%), 섭식장애(1.7%) 순으로 높았다.

- **소아는 특정공포증(7.0%)**, 분리불안장애(4.4%), 적대적 반항장애(2.4%) 순으로,
- **청소년은 적대적 반항장애(5.7%)**, 특정공포증(4.6%), 분리불안장애(3.2%) 순으로 나타남.

○ **유병율이 높게 나타난 주요 장애유형들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① 적대적 반항장애**

- 적대적 반항장애의 **현재 유병률**은 전체 **2.7%**이며, 소아 1.7%(남 2.0%, 여 1.3%), 청소년 3.7%(남 4.4%, 여 3.0%)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 대비 **2.2배** 높았다.
- **평생 유병률**은 전체 **4.1%**이며, 소아 2.4%(남 3.2% 여 1.6%), 청소년 5.7%(남 6.9%, 여 4.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 대비 **2.4배** 높았다.

**② 틱장애**

- 틱장애의 **현재 유병률***은 전체 **2.4%**이며, 소아 2.3%(남 2.7%, 여 1.9%), 청소년 2.4%(남 3.7%, 여 1.0%)로 **청소년의 경우 남자**의 유병률이 3.7배 높음.

* 조사에 사용된 조사도구(KSADS-COMP)는 틱장애를 포함한 일부 장애에 대해 '현재 유병률'만 산출됨

**③ 섭식장애**

- 섭식장애의 **현재 유병률**은 전체 **1.1%**이며, 소아 0.5%(남 0.9%, 여 0.2%), 청소년 1.6%(남 1.1%, 여 2.0%)로 **청소년** 유병률이 소아 대비 **3.2배** 높았다.
- **평생 유병률**은 전체 **1.7%**이며, 소아 1.0%(남 1.3%, 여 0.6%), 청소년 2.3%(남 1.8%, 여 3.0%)로 **청소년** 유병률이 소아 대비 **2.3배** 높았다.

**④ 특정공포증**

(특정공포증의 공포와 불안이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만 국한됨)

- 특정공포증의 **현재 유병률**은 전체 **0.3%**이며, 소아 0.3%(남 0.1%, 여 0.5%), 청소년 0.4%(남 0.4%, 여 0.3%)로 조사되었다.
- **평생 유병률**은 전체 **5.8%**이며, 소아 7.0%(남 6.2%, 여 7.8%), 청소년 4.6%(남 3.2%, 여 6.0%)로 소아 유병률이 1.5배 높았고, **청소년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의 유병률이 **1.9배** 높았다.

**⑤ 분리불안장애**

- 분리불안장애의 **현재 유병률**은 전체 **0.1%**이며, 소아 0.2%(남 0.2%, 여 0.1%), 청소년 0.0%(남 -, 여 0.1%)로 조사되었다.
- **평생 유병률**은 전체 **3.8%**이며, 소아 4.4%(남 4.4%, 여 4.3%), 청소년 3.2%(남 2.7%, 여 3.8%)로 조사되었다.

### 3. 자살 관련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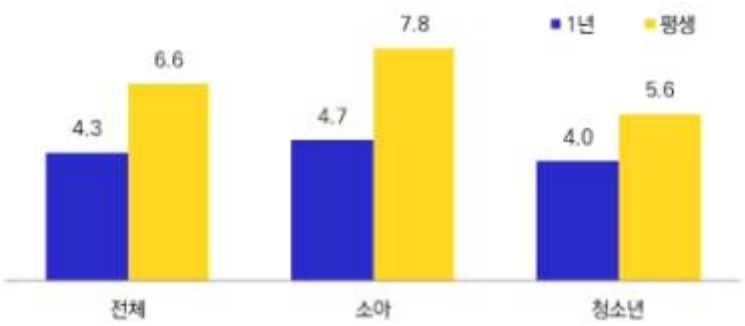
(자살사고, 자살행동 자해와 같은 행동을 현재 또는 평생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를 의미)

- **(현재 경험 비율) 자살사고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소아에 비해 청소년의 수치가 높았다.
- **(평생 경험 비율) 자살사고는 2.2%**(소아 0.3%, 청소년 4.2%), **자살시도는 0.4%**(소아 0.1%, 청소년 0.8.%), **비자살적 자해는 1.6%**(소아 1.0%, 청소년 2.2%)였다.

### 4.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자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전체 **4.3%**(소아 4.7%, 청소년 4.0%)로 나타났다. **평생** 서비스 이용비율은 전체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평생 정신장애 경험자)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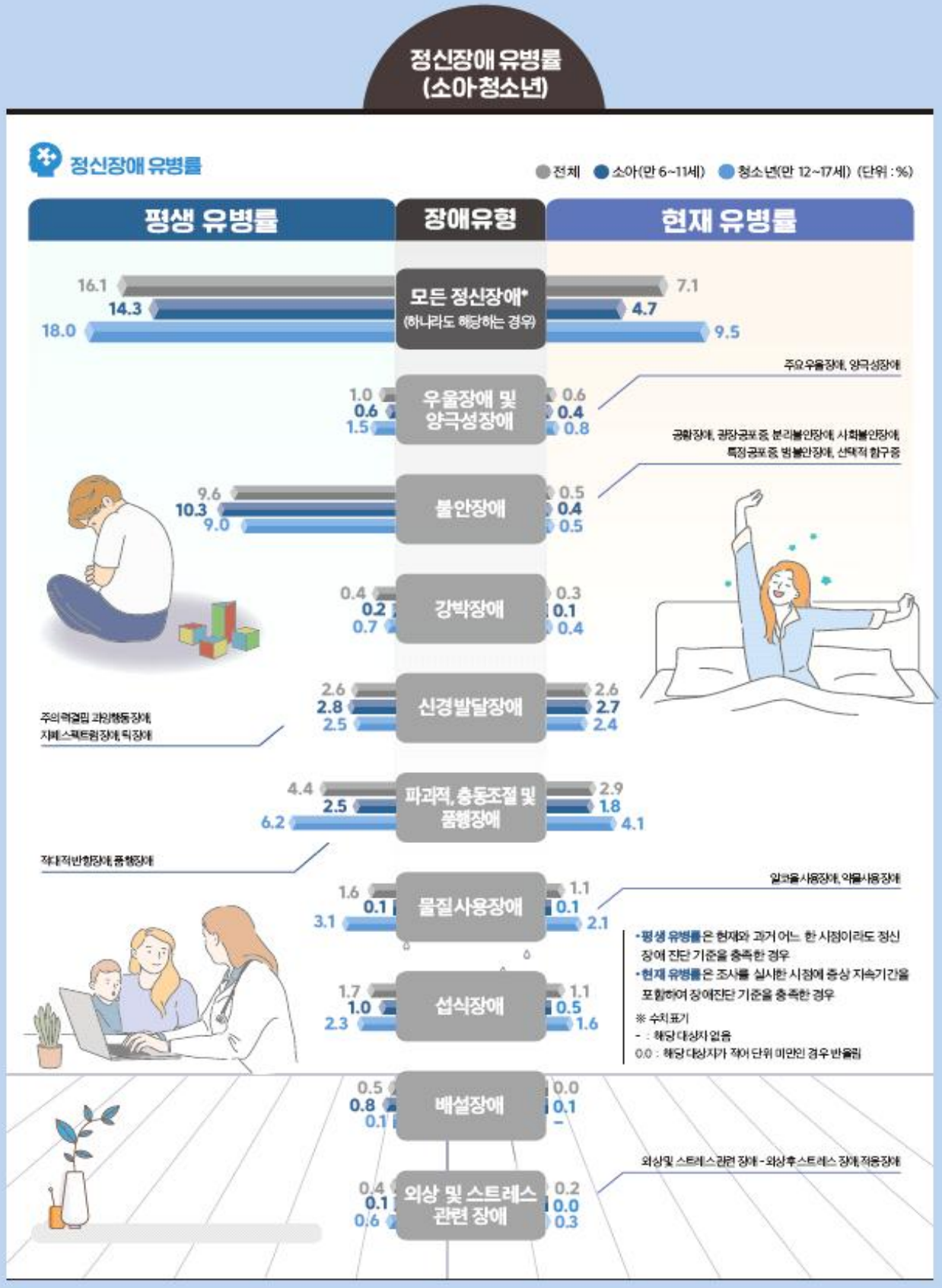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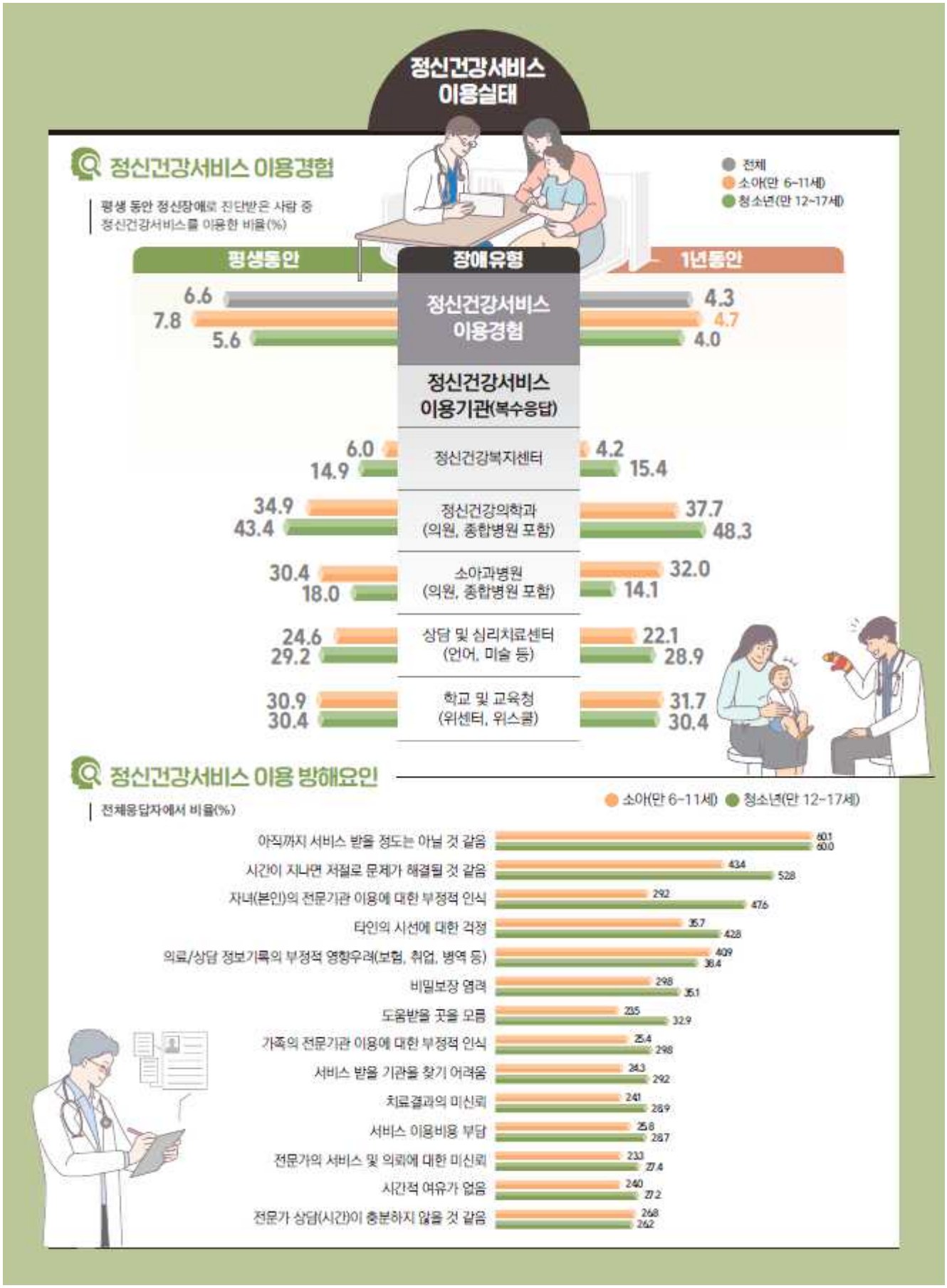

※ 서비스이용 관련 문항은 소아는 부모, 청소년은 본인이 응답한 것임.

○ **정신건강서비스 필요 시 상담선호 대상(1,2,3순위)**으로 **소아**는 소아과 병원(59.5%)가 가장 많았고 가족(56.4%), 정신건강의학과(55.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가족(68.5%),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47.9%), 정신건강의학과(46.5%) 순으로 응답하였다.

○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방해요인**으로는 '아직까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소아 60.1%, 청소년 60.0%),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소아 43.4%, 청소년 52.8%)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 더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정신건강조사누리집(mhs.ncmh.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신장애 유병률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전체 소아(만 6~11세) 청소년(만 12~17세) (단위 : %)
평생 유병률
장애유형
현재 유병률
16.1
14.3
18.0
모든 정신장애*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7.1
4.7
9.5
주요우울장애, 양극성장애
1.0
0.6
1.5
우울장애 및
양극성장애
0.6
0.4
0.8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분리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공포증, 범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9.6
10.3
9.0
불안장애
0.5
0.4
0.5
0.4
0.2
0.7
강박장애
0.3
0.1
0.4
2.6
2.8
2.5
신경발달장애
2.6
2.7
2.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틱장애
4.4
2.5
6.2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2.9
1.8
4.1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알코올사용장애, 약물사용장애
1.6
0.1
3.1
물질사용장애
1.1
0.1
2.1
•평생 유병률은 현재와 과거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
•현재 유병률은 조사를 실시한 시점에 증상 지속기간을 포함하여 장애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수치표기
- : 해당 대상자 없음
0.0 : 해당 대상자가 작아 단위 미만인 경우 반올림
1.7
1.0
2.3
섭식장애
1.1
0.5
1.6
0.5
0.8
0.1
배설장애
0.0
0.1
-
외상 및 스트레스관련 장애 -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0.4
0.1
0.6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0.2
0.0
0.3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실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경험
평생 동안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
전체
소아(만 6~11세)
청소년(만 12~17세)
평생동안
장애유형
1년동안
6.6
7.8
5.6
정신건강서비스 이용경험
4.3
4.7
4.0
정신건강서비스 이용기관(복수응답)
6.0
14.9
정신건강복지센터
4.2
15.4
34.9
43.4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종합병원 포함)
37.7
48.3
30.4
18.0
소아과병원 (의원, 종합병원 포함)
32.0
14.1
24.6
29.2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 (언어, 미술 등)
22.1
28.9
30.9
30.4
학교 및 교육청 (위센터, 위스쿨)
31.7
30.4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방해요인
전체응답자에서 비율(%)
소아(만 6~11세)
청소년(만 12~17세)
아직까지 서비스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음 60.1 60.0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음 43.4 52.8
자녀(본인)의 전문기관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29.2 47.6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 35.7 42.8
의료/상담 정보기록의 부정적 영향우려(보험, 취업, 병역 등) 40.9 38.4
비밀보장 염려 29.8 35.1
도움받을 곳을 모름 23.5 32.9
가족의 전문기관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25.4 29.8
서비스 받을 기관을 찾기 어려움 24.3 29.2
치료결과의 미신뢰 24.1 28.9
서비스 이용비용 부담 25.8 28.7
전문가의 서비스 및 의뢰에 대한 미신뢰 23.3 27.4
시간적 여유가 없음 24.0 27.2
전문가 상담(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음 26.8 26.2


의회